

李朝末期의 「賭地權」과 日帝下의 「永小作」의 關係

— 小作農賭地權의 所有權으로의 成長과 沒落에 대하여 —

愼 鏞 廈

<目 次>

I. 序

II. 事 例

1. 平安北道 義州郡 및 龍川郡 一帶의 原賭地
2. 平安南道 大同郡 및 中和郡 一帶의 轉賭地(굴도지)
3. 黃海道 各地方의 中賭地와 永稅
4. 全羅北道 全州地方의 禾利
5. 慶尙南道 固城郡 및 晉州地方의 並耕

III. 賭地權의 起源과 小作農의 下級所有權의 成長

1. 賭地權의 起源
2. 小作農의 下級所有權의 成長
3. 下級所有權成長의 두개의 길

IV. 土地調査事業과 賭地權의 沒落

1. 土地調査事業의 賭地權 否定
2. 永小作의 設定
3. 小作農의 反應

V. 結 語

I 序

本稿는 우리나라가 日帝植民地統治下에 있던 時期에 그들에 의하여 所謂 <永小作>이라고 規定되어 調査處理되었던 우리나라의 特殊한 小作制度의 起源과 形態에 대하여 종래의 一般的 見解와 다른 角度에서 새로운 解釋을 試圖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小作慣行에 대한 日帝朝鮮總督府의 各種調査資料는 우리 나라의 小作制度를 두가지 基本的 形態로 크게 分類하여 調査處理하고 있다. 그 하나는 <普通小作>이라고 하여 一般적으로 廣範圍하게 行해지는 短期小作이며, 다른 하나는 <特殊小作>이라고

하여 朝鮮民事令에 規定된 永小作 및 慣習上의 永小作을 指稱하고 있다.⁽¹⁾ 日帝朝鮮總督府가 朝鮮民事令을 통하여 民法上으로 《永小作》이라고 規定하고 있는 것은 小作權의 性質上 그 小作存續期間이 20年—50年에 걸쳐 長期間 持續되는 것을 指稱하고 있다. 普通小作에 있어서는 小作人의 小作權이 短期의 小作契約期間동안만 持續되는 不安定하고 脆弱한 것인데 比하여 永小作에서는 小作權이 長期間 持續되는 것이기 때문에 小作人의 小作權이 相對的으로 增大되고 安定된다고 하여 《特殊小作》으로서 處理하고 있는 것이다.

日帝朝鮮總督府는 우리나라의 어떠한 土地에 《永小作》을 設定하였는가? 日帝植民地 統治期間에 전혀 새로운 永小作關係가 設定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除外하고 그 나머지의 大部分은 李朝末期의 우리나라에 이미 存在하고 있던 《慣習上의 賭地權》을 民法上의 永小作權으로 法認함으로서 永小作制度가 設定된 것이었다. 日帝의 各種 小作慣行調查資料는 李朝末期의 우리나라에 《慣習上의 永小作》이 全國各地域에 널리 存在하였음을 報告하고 있다. 예컨대 “朝鮮에 있어서는 耕作地의 借地權으로서 普通小作과는 전혀 別種의 것이 있다. 地主가 그 權利를 買收하지 않는 限, 永久히 存續하고 每年 一定의 借地料를 支拂하며, 그 權利는 地主가 變更될지라도 影響을 받지 아니하고, 또한 地主의 承諾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讓渡할 수 있으며, 또 이를 他人에게 小作시킬 수 있다. 그 性質은 永小作權이라고 할 것이다.”⁽²⁾ 日本人들의 各種調查資料에서 永小作이라고 指摘된 이른바 《慣習上의 賭地權》을 發展시킨 主要地方과 慣習上의 名稱을 간추려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³⁾

- ① 平安北道 義州郡 州內面, 古津面, 威化面, 光城面, 古城面, ……………原賭地
- ② 平安北道 龍川郡 楊西面, 楊下面……………原賭地
- ③ 平安南道 大同郡 南串面, 大同江面 ……………轉賭地(굴도지)
- ④ 平安北道 江西郡 草利面 ……………轉賭地
- ⑤ 平安北道 中和郡 唐井面, 楊井面……………賭地

(1) 日帝朝鮮總督府의 調查資料에는 《特殊小作》과 《特殊慣行》을 區分하여 前者에는 小作權의 性質에 基準을 두고 그 小作存續期間에 있어서의 永小作을 指稱하고 있으며, 後者에는 其他 特殊한 小作慣習을 包含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便宜上의 區分이지 理論的 根據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朝鮮農會 『朝鮮의 小作慣行』(時代と慣行) 1930年 中에서 「明治 四十一, 二年頃の 小作慣行」 pp. 48—49.

(3) 日本人들의 調查資料中에서도 특히 다음의 資料를 中心으로 하여 整理하였음. 『韓國土地農產調查報告』各道編, 1905. 朝鮮總督府中樞院 『小作ニ關スル慣習調査書』 1930. 朝鮮總督府調查資料 第26輯 『朝鮮의 小作慣習』 1929. 朝鮮農會 『朝鮮의 小作慣行』(時代と慣行) 1930. 朝鮮總督府 『朝鮮ノ小作慣行』(上卷) 1932. 朝鮮總督府 『朝鮮ノ小作慣行』(下卷) 1932.

- ⑥ 黃海道 鳳山郡..... 中賭地
- ⑦ 黃海道 信川郡..... 中賭地
- ⑧ 黃海道 載寧郡..... 中賭地
- ⑨ 黃海道 安岳郡..... 中賭地
- ⑩ 黃海道 信川郡 川山面 永 稅
- ⑪ 黃海道 安岳郡 安岳面 永 稅
- ⑫ 全羅北道 全州..... 禾 利
- ⑬ 慶尙南道 晉州郡 金谷面 並 耕
- ⑭ 慶尙南道 固城郡 永吾面, 永縣面,..... 並 耕

이러한 地方에서는 小作人의 小作地에 대한 權利가 크게 成長하였으므로 이를 地主의 權利에 對抗시킬 수 있었다. 農民들 사이에서는 小作人의 이러한 權利를 <賭地權>이라고 불렀으며, 地方에 따라서는 <禾利權> <永稅權> <並耕權> 등으로 불리었다.⁽⁴⁾ 自己의 小作地에 대하여 <賭地權>을 가진 小作農은 自己의 小作地에 대한 이 權利를 地主의 承諾을 要하지 않고 自由롭게 賣買 讓渡 抵當 相續할 수 있었고, 地主가 變更되더라도 이 權利를 自動的으로 新地主에게 對抗시킬 수 있었으며, 이 權利의 程度에 따라 小作料를 切減시킬 수 있었다. 또한 地主가 이 <賭地權>이 發生한 土地를 他人에게 賣渡하려 할 경우에는 먼저 小作人으로부터 이 權利를 代金을 支拂하고 買收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地主가 小作人을 變更하려 할 경우에도 賭地權을 갖인 小作人의 承諾을 얻어 이를 代金을 支拂하고 買收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日帝朝鮮總督府의 모든 調查資料는 小作農의 이 <賭地權>을 이른바 <慣習上의 永小作權>이라고 規定하여 이 中の 一部를 朝鮮民事令以後의 民法의 規定을 받는 <永小作>으로 設定하고 있다. 또한 從來 이 問題를 다룬 모든 日本人 研究者와 우리나라 學者들까지도 이를 역시 <永小作>으로 解釋하여 단 한번도 懷疑를 表示한 적이 없었다.⁽⁵⁾

(4) 小作人의 耕作地에 대한 이러한 成長한 權利의 名稱은 그 地方의 이러한 特殊한 小作慣行의 名稱과 關聯되어 있다. 예컨대 그 小作慣行을 原賭地 轉賭地 賭地 中賭地 등으로 부르는 地方에서는 이를 <賭地權>이라고 하고, 그 小作慣行을 並耕이라고 부른 地方에서는 이를 <並耕權>, 그 小作慣行을 禾利付番이라고 부르는 地方에서는 이를 <禾利權>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가장 널리 불리어진 名稱이 <賭地權>이므로 여기서는 便宜上 이러한 小作人의 權利를 <賭地權>이라고 命名하면서 다른 地方의 同種權利도 代表하는 名稱으로 使用키로 한다.

(5) 小作人의 小作地에 대한 이러한 成長된 權利를 所有權이 아니라 借地權의 一種으로서의 <永小作權>이라고 단적으로 規定하고 있는 日本人들의 代表的 調查資料로서는, 前記諸資料以外에 朝鮮總督府의 『朝鮮의 慣習調查報告書』(1912)가 매우 印象的이다. 이 報告書는 이른바 <賭地權>을 <永小作權>의 一種이라고 法律의 概念規定을 내며 그 以後의 處理에 指針을 주고 있다. 또한 賭地權을 永小作權으로 解釋하는 日本人學者로서는 花島得二 『朝鮮に於ける永小作の史的 發展』 社會經濟史學 8卷 9號 및 9卷 2號, 1938.

筆者는 우리나라의 小作慣行에 대한 日帝朝鮮總督府의 各種調查資料를 再檢討하는 過程에서, 《賭地權》의 解釋에 대한 「永小作權說」에는 部分的 事實만이 看取되고 보다 本質的이고 重要的 注目해야 할 事實이 隱蔽되고 있다는 點을 發見하고, 從來의 「永小作權說」에 대한 懷疑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本稿는 첫째로 《賭地權》이 本質的으로는 《永小作權》으로서가 아니라 《所有權》으로 成長하였다는 새로운 解釋을 하나의 假說로서 提示하려고 하는 것이다. 즉 《賭地權》은 《借地權》의 一種으로서가 아니라 《土地所有權》의 一種으로서 成長한 것이며 그 本質은 近代의 法律的 概念으로서 考察할 것이 아니라 社會經濟的 概念으로서 歷史的으로 考察하여야 할 것임을 強調하고 있다. 各種調查資料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에 의하면 이러한 賭地權 小作에 있어서의 小作農의 權利는 小作人의 小作地에 대한 《耕作權》에 基礎를 두고 이 위에 다시 밑으로부터의 《土地所有權》을 成長시켜나가는 一形態라는 事實을 斷片的으로나마 證明할 수 있다. 여기에서 賭地權의 成長은 小作農의 土地所有權成長이 더욱 本質的인 것이며 永小作權의 性格은 그에 附隨되는 當然한 現象에 不過하다는 事實을 推論할 수 있는 것이다.

李朝末期 우리나라 小作制度에 있어서의 《賭地權》 成長이 小作人의 《土地所有權》 成長이라는 事實을 充分히 證明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나라의 社會經濟史 또는 土地制度史 分野에 새로운 課題를 提供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李朝末期에 이르기 까지 小作農이 그들의 小作地에 대하여 단순히 《耕作權》 뿐만 아니라 《土地所有權》을 꾸준히 成長시키면서 그들의 身分的 및 經濟的 地位를 向上시키는 內的 運動을 持續시켜 왔다는 극히 發展的인 事實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從來 우리나라 小作制度에 있어서 小作人의 《下級所有權》을 認定하지 않는 支配的 見解에도 再考를 要求하는 것이 된다. 단순한 小作權이나 耕作權은 下級所有權으로 認定할 수 없다는 見解를 가진 분들도 賭地權이 《土地所有權》의 一種으로서 밑으로부터 成長하여 地主의 土地所有權을 不完全하고 部分的인 所有權으로 制限시켜버리는 事實에 直面해서는, 耕作權을 下級所有로 認定하든지, 또는 賭地權만을 下級所有로 認定하든지, 또는 耕作權과 賭地權을 合하여 下級所有로 認定하든지, 어쨌든간에 小作人이 小作地에 대하여 《下級所有權》을 形成하고 그것을 成長시키면서 自由롭게 發展해나가는 動態的 過程을 不認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小作人의 《賭地權》이 地主의 土地所有權에 큰 制限을 加하고 그것이 小作地에 대한 不完全한 部分的 所有權으로 限定되도록 規制한 小作人의 成長過程을 證明할 수 있다.

더욱 注目해야 할 것은 小作人의 小作地에 대한 《土地所有權》으로서의 《賭地權》成

長이 그 規模는 크지 않으나 그 分布는 全國에 걸쳐 廣範圍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事實이다. 地圖를 펴놓고 그리면 마치 全國에 뿌려진 無數한 點들과 같이 全國各地에서 이 小作農의 《賭地權》이 成長하고 있었다. 資料가 充分치 않아 그 分布의 範圍를 精密히 밝히기가 어려우나, 주어진 一部資料로서도 위에 든 地方以外에 다음의 地方에서 《賭地權》이 成長하였다고 報告되고 있다.⁽⁶⁾

- ⑮ 京畿道 水原郡 長安面, 臺章面
- ⑯ 京畿道 開豐郡 嶺南面
- ⑰ 忠清北道 報恩郡 俗離面
- ⑱ 忠清北道 丹陽郡 大崗面, 草坪面
- ⑲ 全羅北道 益山郡 王宮面
- ⑳ 全羅南道 莞島郡 所安面, 蓋花面
- ㉑ 全羅南道 咸平郡 海保面, 月也面
- ㉒ 全羅南道 靈光郡 郡南面
- ㉓ 全羅南道 潭陽郡 龍面, 九岩面
- ㉔ 全羅南道 和順郡 西面, 豐泉面, 松岩面, 道林面, 福面, 綾州面
- ㉕ 全羅南道 光州郡 松汀面
- ㉖ 全羅南道 光陽郡 骨岩面
- ㉗ 全羅南道 順天郡 海龍面
- ㉘ 慶尙北道 永川郡 青道面
- ㉙ 慶尙北道 慶州郡 慶州面, 內南面, 見谷面, 西面, 山內面, 外東面, 內東面, 北面, 江東面, 江西南面, 陽北面, 陽南面
- ㉚ 慶尙北道 金泉郡 甌山面, 鳳山面
- ㉛ 慶尙北道 高靈郡 雙洞面
- ㉜ 慶尙北道 善山郡 玉上面
- ㉝ 慶尙南道 咸安郡 漆北面
- ㉞ 慶尙南道 南海郡 雪川面

(6)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上卷) 1932. pp. 800—806에서 간추림. 이 調査는 1917年 부터 1930年에 걸친 現地調査를 各道에서 朝鮮總督府에 報告한 것이므로 時期的으로 賭地權의 存在 形態를 잘 報告하지 못하고 있다. 이 調査時點은 이미 賭地權이 大部分 消滅되었던 時期이므로 事實의 극히 一部만이 알려져 있음에 不過하다. 各地方의 名稱과 行政區劃은 當時의 것을 그대로 記載하였다.

- ③⑥ 慶尙南道 統營郡 光道面
- ③⑥ 黃海道 河東郡 花開面
- ③⑦ 黃海道 黃州郡 三田面
- ③⑧ 黃海道 信川郡 文化面, 加蓮面
- ③⑨ 江原道 三陟郡 北三面
- ④⑩ 江原道 麟蹄郡 郡南面
- ④⑪ 江原道 平昌郡 大和面
- ④⑫ 江原道 鐵原郡 於雲面
- ④⑬ 咸鏡南道 永興郡 長興面, 德興面
- ④⑭ 咸鏡南道 利原郡 東面, 郡南面, 郡西面
- ④⑮ 咸鏡南道 安邊郡 瑞谷面, 新芳面, 安道面

이와 같은 <賭地權>의 成長이 全國的 現象이었다는 事實은 이것이 어떠한 一部地方의 特異한 小作慣行이 아니라 李朝後期의 커다란 社會變動과 關聯된 새로운 變化의 한 徵表이었다는 事實을 推定케 해주고 있다.

本稿는 小作人의 小作地에 대한 <賭地權>이 어떻게 <下級所有權>의 成長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이 日帝下에서 어떻게 하여 <永小作>으로서만 解釋되고 處理되었는가 그 始末을 밝힘으로써 李朝後期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小作農 賭地權의 所有權으로서의 成長과 沒落에 대하여, 그리고 그를 通한 이 時代의 小作農의 身分的 및 經濟的 地位의 變動에 대하여 論及하려고 한다. 그러나 本稿는 그 出發부터 根本的인 制約을 받고 있다. 그것은 小作農의 賭地權이 發生한 小作慣行이 民間에서 行해진 慣習的인 것이었기 때문에 李朝官衙의 公式文書나 우리나라側의 史料를 아직 發見하지 못했고 이를 資料로서 使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本稿는 그 資料를 전적으로 日本人들이 그들의 植民政策上의 必要에 의하여 施行한 各種의 慣習調査 小作慣行調査 土地農產調査等에 依存하여 考察하였다.⁽⁷⁾ 그러므로 實證에 있어서도 不充分한 점이 많게 되고 가장 詳細히 알고 싶은 事

(7) 本稿의 資料로서 依存한 日本人들의 主要調査資料는 다음과 같다.

- ① 統監府招請調査團調査『韓國土地農產調査報告』1905年.
- ② 度支部『土地調査參考書』第1號—第3號 1909~10年.
- ③ 度支部『小作農民ニ關スル調査書』1910
- ④ 朝鮮總督府『朝鮮ノ慣習調査報告書』1912年.
- ⑤ 朝鮮總督府中樞院『小作ニ關スル慣習調査書』1930年.
- ⑥ 朝鮮總督府調査資料 第26輯『朝鮮ノ小作慣習』1929年.
- ⑦ 朝鮮農會『朝鮮ノ小作慣行』(時代卜慣行) 1930年.
- ⑧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上卷) 1932年.
- ⑨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下卷) 1932年.

實에 資料가 없어 밝히지 못한 部分이 많다. 따라서 이 論考는 日本人들의 調查資料를 使用하여 이 問題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解釋上의 假設定立 내지 問題提起의 性格을 가진 것으로 制約되어 있다.

먼저 小作農의 賭地權이 發生한 地域의 몇가지 賭地權의 事例를 간단히 檢討한 다음 그 에 대한 解釋上의 諸問題에 대하여 論議하려고 한다.

II 事 例

1. 平安北道 義州郡 및 龍川郡 一帶의 原賭地

日帝朝鮮總督府의 各種調查資料를 通하여 보면, 鴨綠江 및 그 支流인 古津江의 沿岸인 平安北道 義州郡 州內, 古津, 威化, 光城, 古城의 五面과 龍州郡 楊西, 楊下의 二面에는 李朝後期부터 <原賭地>라고 稱하는 特殊한 小作慣行이 行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威化面에서는 耕地가 畹이 거의 없고 주로 田으로 構成되었기 때문에 <原賭地>도 田에서만 行해졌으나 其他地域에서는 이것이 주로 畹을 中心으로 하여 行해졌다.

이 地域에 있어서의 <原賭地> 小作의 特徵에 대하여 日帝朝鮮總督府의 한 調查資料는 다음과 같이 報告하고 있다.

“原賭地는…… 特別의 事情으로 因하여 設定한 永久의 小作權으로서, 地主일지라도 相當한 代價를 支拂하여 이를 買收하지 않는 限 永久히 存續하여 期限이 없으며, 地主變更의 경우에 있어서도 小作人은 그 權利를 新所有者에게 對抗시킬 수 있다. 또한 小作人은 地主의 承諾을 얻지 않고, 그 權利를 讓渡하고, 또 典當할 수 있으며, 賭地를 讓受한 者는 當然히 그 權利를 地主에게 對抗시킬 수 있다. 또한 小作人은 任意로 그 土地를 他人에게 轉貸할 수 있고, 地主는 이를 拒否할 수 없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土地를 他人에게 轉貸함과 같은 일은 전혀 그 例가 없다고 한다.”⁽⁸⁾

이 地域의 <原賭地> 小作慣行에 있어서 그 小作料의 徵收方法은 普通小作과 마찬가지로 <賭地法>⁽⁹⁾과 <打作法>이 行해졌으나, 賭地法에 의한 것 보다 打作法에 의한 것이 더 많았다고 報告되고 있다.

(8)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下卷) 參考編『從來ノ朝鮮ノ小作慣行調查資料』p.383.

(9) 이 地方에서는 小作料徵收方法으로서의 賭地法을 일반적으로 <文於>라고 불려 特殊한 小作慣行인 <原賭地>의 賭地와 區分하였던 것 같다. 李朝末期 小作料徵收方法으로서의 <賭地法>과 <打作法>에 대해서는 拙稿『韓國의 地主制度에 關한 一研究—日帝下의 土地小作制度에 대하여—』(其一)『經濟論集』第五卷 第三號 (1966年 9月)에서 說明한 바 있다.

《原賭地》의 小作料率은 一般的으로 普通小作에 있어서의 小作料率 보다 低率이었다. 日帝植民地統治期에 있어서도 例컨대 土地가 肥沃한 威化面에 있어서의 普通小作에 있어서의 小作料率은 生産量의 2/3가 支配的이었는데 比하여 小作農이 《賭地權》을 가지고 있는 小作地에서는 小作料率이 生産量의 1/2로 低下하여 地主와 小作人이 收穫을 折半으로 나누는 것이 一般의 慣習이었다.⁽¹⁰⁾ 또한 이 地方의 다른 地域에 있어서 普通小作의 小作料率이 生産量의 1/2인 경우에는 《原賭地》에서와 같이 小作人이 《賭地權》을 가진 小作地의 小作料率은 1/3이 支配的이었다.⁽¹¹⁾ (其他 小作料納付의 形態, 時期, 場所 및 地稅負擔關係 등은 普通小作과 다름이 없었다.)

《原賭地》小作에 있어서의 이 외에도 小作人의 權利가 매우 強大하게 成長하여 있었다. 예컨대, 地主가 《原賭地》를 解約하기 위하여 小作人에게 相當한 代價를 支拂하고 이를 買收하려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地主는 이를 任意로 買入할 수 있는 權利를 갖고 있지 못하였으며, 小作人의 意思에 反하여 그 權利를 買收할 수 없었다. 地主의 意思로서가 아니라 먼저 小作人의 意思를 通知하여 묻고 그의 同意를 얻어 그와 協定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와 對照的으로 小作人은 언제라도 《賭地權》의 解約을 任意로 行할 수 있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의 小作人이 地主에게 賭地權의 解約을 要求하는 일은 없었다. 왜냐하면 小作人이 經濟的으로 自己의 《賭地權》을 維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얼마든지 他人에게 賣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小作人이 小作料를 支拂하지 않거나 小作料를 怠納하는 경우에도 慣習上으로 地主는 《原賭地》의 賭地權을 否認하거나 또는 原賭地小作關係를 解除하여 小作人의 《賭地權》을 결코 消滅시킬 수 없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地主는 一定한 期間을 定하여 小作料의 納入을 督促하고 그래도 小作人이 小作料를 支拂하지 않는 경우에는 小作人과 協定한 相當의 價格으로 《賭地權》을 買收하여 그 代價를 가지고 小作料를 辨濟시키는 方法以外에는 없었다.⁽¹²⁾ 小作人이 小作料를 支拂하지 않는 경우에도 地主가 《賭地權》을 消滅시킬 수 없었고, 반드시 이를 時價에 依하여 買收하여야 했다는 事實은 小作農의 《賭地權》이 어떠한 性格의 強固한 權利인가를 示唆해 주는 特徵的인 事實이다.

이 地域에서는 小作地中에서 普通小作보다 《原賭地》小作이 더욱 많았고 그에 따라서 《賭地權》의 賣買가 盛行하였는 바, 이를 《賭地賣買》라 稱하였다. 즉 이 地方에서 賭地

(10) 朝鮮總督府中樞院『小作ニ關スル慣習調査書』p. 42.

(11)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上卷)p. 755.

(12)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下卷)參考編『從來ノ朝鮮ノ小作慣行調査資料』p. 384. 參照.

賣買라는 것은 賭地權賣買를 가리키는 것이었고, 도리어 賭地權이 發生되지 않은 土地를 賣買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文記에 특별히 <<具賭地>> 또는 <<具賣賭地>> 등의 文字를 特記하여 賭地權도 함께 賣買함을 表示하는 것이 慣例이었다. (13)

이 地方에 있어서 <<原賭地>>의 賭地權이 發生하였던 小作地面積은 李朝末期에는 相當히 廣濶하였던 것 같다. 威化島의 例를 들면 島內 上湍洞(舊東三里)의 約 2,000 坪의 土地를 除外하고는 元來 全部가 小作人의 賭地權이 發生한 <<原賭地>>小作地이었으며, 其他 附屬島嶼의 土地도 大部分이 그러하였다고 報告되고 있다. 또 光城面 및 楊西面의 例를 들면 李朝末期一日帝強占以前에는 地主가 約 800 人, 小作人은 2,000 戶 以上이 <<原賭地小作>>을 하였으나, 日帝強占以後에는 그것이 消滅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예컨대 楊西面의 百餘戶가 되는 某部落은 日帝強占以前에는 全戶가 <<賭地權>>을 가지고 있었으나, 1929 年에는 단지 5 戶만이 賭地權을 가진 小作人으로 남았으며, 光城面 正心洞, 城外洞은 日帝強占以前에는 數百戶의 賭地權을 가진 小作人이 있었으나, 1929 年에는 地主가 11 戶, 小作人이 19 戶, 原賭地小作地畝 25 餘町步만이 <<原賭地>>小作關係를 持續하고 있었다고 報告되고 있다.

1929 年頃に 있어서의 威化島를 中心으로 한 鴨綠江流域에서의 <<原賭地>>小作의 殘存面積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 第 1 表와 같다.

〈第 1 表〉		鴨綠江流域 威化島附近의 原賭地小作				(1930 年頃)	
島名	所屬面	原賭地面積	具賭地面積	賭地權者數	地主數	備考	
威化島	威化面	田 530 町 6 反	約 300 餘 町	546 戶	492 戶	面調査	
小桑島	古城面	田 70 町	不 明	80 戶	20 戶	同	
多智島	州內面	田 7 町 反	不 明	5 戶	4 戶	同	

資料：『朝鮮ノ小作慣行』(上卷) p. 709

- (13) <<具賭地>>는 地主가 小作人의 賭地權을 買收하거나 또는 小作人이 地主의 所有權을 買收함으로써 賭地權이 消滅된 것 즉 小作人의 賭地權과 地主의 所有權이 併合되어 完全한 所有權으로 된 것을 말한다. <<具賣(買)賭地>>는 위의 具賭地를 賣買하는 것을 말한다.

具賣賭地 文記例

光武四年 庚子 十二月 二十五日

右明文事段 自己具賣賭地畝 伏在光城面正心里南邊具下西堀 兩行畝 東第一行 四標段 東南北三面體堀 西買主畝 西越一行畝 四標段 東南西三方體堀 北金信佑畝 四標分明遂如 價折則錢文一千一百兩 準計捧上是遺 本文記二丈 並右人處永遠放賣爲去乎 日後彼此雜言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正事

具賣賭地畝放賣主 朴 日 善 ①
證 崔 在 煥 ②
筆 金 萬 亨 ③

日帝朝鮮總督府의 調査資料는 《原賭地》小作의 李朝末期에 있어서의 盛行과 日帝下에 서의 消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그리하여 鴨綠江沿岸에 있어서의 原賭地는 舊時에 있어서는 적어도 田畝合하여 二, 三千町步를 넘는 廣大한 地域에 分布되어 그 小作戶數도 역시 數千戶에 達하였다고 推定되나, 이제는 그 面積과 小作人數가 激減하였으며, 그중 光城面 및 楊西面地方이 甚하고, 殘餘의 原賭地도 역시 漸次로 普通小作地로 變하여 가는 實情에 있다.”⁽¹⁴⁾

2. 平安南道 大同郡 및 中和郡一帶의 轉賭地(굴도지)

大同江下流 및 昆陽江 河岸인 平安南道 大同郡 南串面 艾浦里, 大耳島里, 小耳島里, 月內里, 魯南里, 黃龍里, 石寺里, 甫城里, 鯉新里, 覺金里, 및 大同江面 斗圍里 等の 地域에 있어서는 農民들 사이에 《굴도지》 《轉賭地》 또는 단지 《賭地》라고 불리운 特殊한 小作慣行이 行해졌다. 어떠한 名稱의 경우에나 文記에는 단지 《賭地》라고만 記錄하는 것이 慣例이었다.⁽¹⁵⁾

《轉賭地》小作에 있어서는 小作人은 自己의 小作地에 대하여 《賭地權》을 가지고 그 土地를 永久히 耕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賭地權》을 自由로 賣買 讓渡 抵當 相續할 수 있었으며, 地主라 할지라도 小作人에게 相當價額을 支拂하여 이를 買收하지 않으면 그 權利를 消滅시킬 수 없었다.⁽¹⁶⁾

물론 《轉賭地》에 있어서도 《賭地權》을 갖인 小作人은 地主가 變更되는 경우에도 그 權利를 新所有者에게 對抗시킬 수 있었으며, 또한 그 權利가 賣買 또는 讓渡될 경우에 讓受人은 그 權利를 當然히 地主에게 對抗시킬 수 있었다. 《轉賭地》小作地에서 《賭地權》을 갖인 小作人이 그 權利를 他人에게 讓渡할 경우에는 口頭로 이를 行하는 일은 없고 반드시 放賣文記를 만들어 이를 買收人에게 交付하고, 이미 舊文記가 있는 것은 이를 添付하는 것이 慣例이었다. 또한 賭地權을 抵當하는 경우에도 抵當文記를 만들어 舊文記에

(14) 朝鮮總督府 『朝鮮ノ小作慣行』(上卷) p. 710.

(15) 이 地域에서는 《轉賭地》(굴도지)라는 名稱과 함께 《賭地》라는 名稱이 同一한 事實에 대하여 混用되었던 것 같다. 《굴도지》 《轉賭地》의 語源은 《賭地權》이 自由로 賣買되어 그 權利取得者가 굴러서(轉輾하여) 變更되어나간다는 事實에서 發生한 것으로 推定된다. 『朝鮮ノ小作慣行』(上卷)에서는 《轉賭地》라는 名稱을 使用하지 않고 단지 《賭地》라는 用語를 劃一的으로 使用하고 있으며, 앞서 본 鴨綠江沿岸의 《原賭地》도 역시 《賭地》라는 用語로서만 使用하고 있다. 이 調査資料에서는 《賭地權》이 發生한 모든 小作地의 小作慣行을 《賭地》라는 名稱을 使用하여 報告하고 《原賭地》 《轉賭地》 《具賭地》...等은 그 賭地의 適用用語로서 取扱하고 있다. 어쨌든 여기서 注意할 것은 小作人의 《賭地權》이 發生한 小作地의 小作慣行으로서의 《賭地》와 一般的으로 小作料徵收方法에 있어서의 《賭地》 또는 《賭地法》과 混同하지 않아야 한다는 點이다. 兩者는 名稱은 同一하나 內容은 전혀 相異한 次元이 다른 概念이다.

(16) 朝鮮總督府中樞院 『小作ニ關スル慣習調査書』 p. 62.

添付하여 抵當權者에게 交付하는 것이 慣例이었다.⁽¹⁷⁾

이 地域의 <<轉賭地>>小作에 있어서의 小作料徵收方法은 古來로 <<定租法>>(定額小作料)으로서 小作料額이 增減되는 일이 없었다고 報告되고 있다. 그 小作料額은 普通小作의 小作料에 對比하여 극히 低廉한 것으로서 畓에 있어서는 二斗落에 버 一石의 小作料를 標準으로 하고, 垆에 있어서는 四十五坪에 버 二斗를 普通으로 하였다고 한다. 이 小作料額은 同一地域의 普通小作料額의 約折半에 接近하는 低廉한 것이었다.⁽¹⁸⁾ 이것은 比率로서는 生産量의 1/4—1/3에 해당하는 低廉한 것이었으며, 小作人들 사이에서도 이 <<轉賭地>>小作은 小作人에게 매우 有利한 小作關係라고 云謂되고 있다고 報告되고 있다.⁽¹⁹⁾

<<轉賭地>>小作에서 賭地權을 가진 小作人이 이를 一般小作人에게 轉貸하였을 경우의 轉貸小作料도 元地主에게 納付하는 小作料는 定租法에 의한 低廉한 小作料이었다. 따라서 이 地方에서는 貨幣資本을 集積한 者가 賭地權을 買收하여 이를 他人에게 다시 轉貸한 다음, 元地主에게 支拂하는 小作料額보다 高額인 普通小作에 있어서의 小作料額을 徵收하여 그 差額을 中間利得으로서 獲得하는 事例가 가끔 있었다. 이 경우에 轉借地의 轉貸小作料額은 生産量의 1/2 乃至 3/5 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日帝植民地統治初期의 調查報告이다.⁽²⁰⁾

李朝末期에는 大同江沿岸에 있어서의 이러한 <<轉賭地>>小作은 그 面積에 있어서나 賭地權을 가진 小作農戶數에 있어서나 相當히 廣範圍하게 分布되어 있었던 것으로 推定된다. 日帝調查資料도 指摘하기를, “그 面積도 昔時에 있어서는 相當히 廣大하여 무려 二千町步를 내려가지 않으며, 小作戶數도 역시 數百戶를 算하였던 것으로 推察된다”⁽²¹⁾고 報告하고 있다. 그러나 이 地域의 <<轉賭地>>小作 역시 日帝治下에서 鴨綠江沿岸의 <<原賭地>>와 마찬가지로 急激히 消滅하여 갔는 바 1929—30 年頃의 이 地域의 賭地權이 發生

(17) 朝鮮總督府中樞院『小作ニ關スル慣習調査書』p. 63.

(18)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上卷) p. 755 參照.

(19) 이 <<轉賭地>>의 小作料는 相對的으로 低廉하고 그것이 <<定租法>>에 의한 定額小作料이 있기 때문에 古來로 災害가 極甚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小作料를 減免하는 事例가 없었으며, 但 收穫이 全無한 狀態의 凶作일 때에는 小作料는 全免되는 것을 慣習으로 하였다고 한다.
(20)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上卷) p. 756.

이러한 轉貸小作은 鴨綠江流域의 <<原賭地>>의 경우에도 가끔 行해졌다. 鴨綠江流域의 原賭地의 轉貸小作料는 大同江流域의 轉貸小作料보다 약간 高率이었던 것 같으며 日帝時에 最高 3/4 까지 上昇하였다고 報告되고 있다. 즉 元地主가 生産量의 2/4를 取得하고, 賭地權을 가진 轉貸小作人이 1/4, 轉借小作人의 나머지 1/4을 取得하였다는 것이다.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上卷) p. 754.

(21)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上卷) p. 710.

한 小作地의 殘存面積과 그 小作戶數는 다음 第2表와 같다(여기서 賭地權者는 轉貸小作人이 아닌 賭地權을 가진 現實耕作者를 나타내고 있다).

〈第2表〉 大同江流域의 轉賭地小作 (1930年頃)

地名	賭地權이附隨하는土地										
	地主數		賭地權者數		耕作者數					1929年 1垓及總面積	
	1930年	1929年	1930年	1929年		1930年	1929年	1930年	1929年	垓	計
大同郡南串面艾浦里	22	29人	210	54人	54	106町 9反	238.5反	8町 9反	7.1反	7.1反	247.6反
小耳島里		32		43	48		306.0		—	—	306.0
大耳島里		29		60	70		324.0		10.0	23.0	357.0
月內里		23		48	46		155.0		95.0	.8	250.8
中和郡唐井面儉岩里	20	50	57	57	56	67町	—	—	—	.4	176.3
積善里		27		57	59		7.7		7.7	.5	355.8
陽羅里		—		—	—		—		—	—	—
合計		190		319	333		1,547.0		114.7	31.8	1,693.5

資料：『朝鮮ノ小作慣行』(上卷) pp. 710—711.

역시 大同江의 支流인 平安南道 中和郡 唐井面 積善里, 儉岩里, 松鳴里, 陽羅里 및 楊井面 石陽里 等の 地域에 있어서는 大同郡의 <轉賭地>와 類似한 <賭地>小作이 行해졌다. 이 地方에서는 普通小作은 小作料徵收方法에 따라 <支定>과 <打作>으로 呼稱하고, 이 普通小作과 區別하여 小作人의 <賭地權>이 發生한 小作만을 <賭地>라고 稱하였다.⁽²²⁾

물론 이 地方의 <賭地>小作에 있어서의 小作人의 <賭地權>도 自己의 小作地를 永久히 耕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地主일지라도 相當의 代價를 支拂하여 이를 買收하지 않으면 이를 消滅시킬 수 없었다. 또한 <賭地權>을 가진 小作人은 地主가 變更된 경우에도 그 權利를 新所有者에게 對抗시킬 수 있었으며, 任意로 그 權利를 賣買 讓渡 抵當 相續할 수 있었고, 또한 讓受人은 當然히 그 權利를 地主에게 對抗시킬 수 있었다. 또한 賭地權을 가진 小作人은 地主의 承諾을 얻지 않고도 土地를 他人에게 轉貸할 수 있었으며, 때로는 土地를 農業耕作 以外の 다른 目的에 自由로이 使用할 수도 있었다.

이 地方의 賭地小作에 있어서의 小作料는 定租法의 範疇에 包容되는 <支定>의 方法에 의하여 이를 定하고, 그 額을 增減할 수 없었으며, 凶作의 경우에도 小作料의 減

(22) 朝鮮總督府中樞院『小作ニ關スル慣習調査書』p. 101.

를 請求할 수 없는 것이 慣例이었다. 그러나 그 小作率은 매우 低廉하였다.⁽²³⁾

日本人들의 調査資料는 이 외에 다시 平安南道 江西郡 草里面 南湖里에서도 大同郡의 그것과 類似的한 <轉賭地> 또는 <賭地>가 行해졌음을 報告하고 있다. 이 地方에서는 <轉賭地>小作에 있어서의 地主에의 小作料를 <芦稅>라고 불렀으며, 每年 定率에 의하여 이를 支拂하는 것이 普通이었다. 그 小作料額은 普通小作에 있어서의 小作料額에 比하여 相當히 低廉하였다고 報告되고 있다.

이 地方의 <轉賭地>에 있어서도 물론 賭地權을 가진 小作人은 地主의 承諾을 얻지 않고 任意로 그 權利를 他人에게 讓渡하거나 또는 그 土地를 他人에게 轉貸할 수가 있었으며, 그 權利의 讓受者는 當然히 그것을 地主에게 對抗시킬 수가 있었다. 또한 地主變更의 경우에 있어서도 賭地權을 가진 小作人은 그 權利를 新地主에게 對抗시킬 수가 있었다.

그러나 江西郡地方의 <轉賭地>小作은 1909年(隆熙 3年)까지는 田畝에서 다같이 行해졌으나 그 後 日帝治下에 들어와서는 모두 그 자취를 감추었다고 報告되고 있다.⁽²⁴⁾

3. 黃海道 各 地方의 中賭地와 永稅

黃海道 載寧郡, 信川郡, 安岳郡 等地에서는 위에서 事例로서 든 鴨綠江流域 및 大同江流域의 賭地權이 發生한 特殊한 <賭地>小作과는 약간 다른 <中賭地>라고 하는 特殊한 小作慣行이 田畝를 通하여 매우 廣範圍하게 行하여 졌다. 이 <中賭地>小作에 있어서의 <賭地權>을 耕作者로서의 小作農이 갖는 경우보다는 <中畝主>라고 하는 中間者가 介在하여 中賭租라고 불리는 一定의 小作料를 徵收하는 權利를 行使하였다.⁽²⁵⁾

이 地方에 있어서의 <中賭地>小作慣行은 賭地權을 小作人이 갖지 못하고, 처음부터 中畝主가 이를 獲得하여 行使하였다는 事實에 그 特徵이 있다. 元來 이것은 <宮房>이 그 所屬土地를 開墾하거나 또는 水害豫防을 위한 堤防을 築造하는 者에 대하여 그 報酬로서 賭地權을 認定해 주고, 이에 따라 小作料가 普通小作에 比하여 相當히 低廉하게 되자

(23)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下卷) 參考編『從來ノ朝鮮ノ小作慣行調査資料』pp. 412—413 參照.

이 地域의 <賭地>小作에 있어서 賭地權을 가진 小作人이 土地를 一般小作人에게 <轉貸>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元地主는 直接 轉借人에게 대하여 小作料를 請求할 수 없었다.

또한 轉貸人인 賭地權者는 轉借人이 小作料를 支拂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理由로 하여 元地主에 對한 小作料支拂義務를 免할 수 없는 것이 慣習이었다. 이 地方에서는 畝에서만 아니라 이외에 蘆田에서도 <賭地>가 行해지었다.

(24) 朝鮮總督府中樞院『小作ニ關スル慣習調査書』pp. 91—92. 參照.

(25)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下卷) 參考編『從來ノ朝鮮ノ小作慣行調査資料』p. 418. 이 地方에서 <賭地權>이 發生한 特殊한 小作慣行을 <中賭地>라고 呼稱한 것도 바로 이 <中畝主>가 元地主와 小作人 사이에 介在하여 <賭地權>을 가지고 <中賭租>를 徵收한데서 緣山한 것이라고 한다.

貨幣資本을 集積한 富豪들의 着眼한 바 되어 그들은 宮房土地를 開墾 또는 改良하여 이를 <<自耕>>하지 않고 一般小作人에게 轉貸함으로써 그 差額을 中間利益으로 取得하게 되어 이 小作慣行이 나타났다고 傳해지고 있다. 이것이 擴大되어 民有地에 있어서도 地主가 遠隔地에 居住하거나 小作料가 低廉한 土地에 있어서는 賭地權이 發生하고, 賭地權을 가진 小作人은 一般小作人에게 그 權利를 轉貸하여 小作料의 差額을 取得하게 되었으며, 이 慣習이 長期間 持續되자 <<中賭地>>라는 小作制度가 形成되고 <<中畝主>>라고 稱하는 中間介入者가 形成된 것이라고 한다.⁽²⁶⁾

中畝主는 이러한 여러가지 過程을 通하여 그 權利를 取得하였기 때문에 그가 自己의 <<賭地權>>을 가지고, 그 土地를 <<自耕>>할 것인가 또는 그것을 他人에게 <<轉貸>>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혀 그 賭地權者의 任意에 의한 것이었다. 賭地權者가 그것을 自耕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鴨綠江流域의 <<原賭地>>나 大同江沿岸의 <<賭地>> 또는 <<轉賭地>>와 類似한 小作形態로 되었고, 他人에게 轉貸하는 경우에는 中畝主는 一種의 中間地主로서의 機能을 遂行하였다.⁽²⁷⁾

中畝主가 賭地權을 가진 小作地를 一般小作人에게 轉貸하는 경우에는 <<中畝主>>는 그러한 土地의 轉貸에 있어서 元地主의 承諾을 求하지 않았으며, 中畝主가 任意로 그 權利를 賣買 讓渡 抵當 相續할 수 있었다. 또한 그 讓受人은 當然히 그 讓受한 權利를 地主에게 對抗시킬 수가 있었다. 이러한 中畝主의 中賭地權은 地主일지라도 그것을 買收하지 않는 限 그 權利를 消滅시킬 수 없었고, 中畝主는 自己의 賭地權을 永久히 存續시킬 수 있었으며, 地主가 變更된 경우에도 이것을 秋毫의 影響도 받지 않고 新地主에게 對抗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中畝主>>는 年의 豐凶에 關係없이 元地主에 對하여 每年 一定의 小作料를 支拂하도록 要求되었으며, 이것을 <<賭支>> 또는 <<元賭支>>라고 稱하였다. 그 小作料額은 收穫量의 約 1/4 程度되는 것이 普通이었다. 이 <<元賭支>>는 小作人으로부터 直接 地主에게 支拂하는 것이 通例이었으나, 小作人이 이를 支拂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中畝主가 이를 支拂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경우에 中畝主가 小作人으로부터의 小作料未支

(26)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下卷) 參考編 『從來ノ朝鮮ノ小作慣行調査資料』 p. 418 및 pp. 425—427 參照.

(27) 日本人들의 調査資料는 <<賭地權>>이 所有權으로서가 아니라 借地權으로서의 永小作權이라는 것을 主張하기 위하여 이 <<中畝主>>를 반드시 <<中間借地人>>이라고 解釋하여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中畝主>>가 中間借地者인가 中間地主인가의 問題는 法律上의 概念으로서가 아니라 社會經濟의 概念으로서 嚴密하게 再檢討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章에서 이 問題를 다루고 있다.

拂을 理由로하여 地主에 대한 義務를 免除받거나 할 수는 없었다.⁽²⁸⁾

中畝主와 小作人과의 關係는 普通小作의 경우에 있어서의 地主와 小作人과의 關係와 다를 바 없었으며, 小作料는 《賭支》 또는 《並作》의 小作料徵收方法에 의하여 徵收하였다. 《並作》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口頭로서 契約을 하고 《賭支》의 경우에는 賭支標라는 文書를 作成하여 中畝主에게 交付하였다. 《賭支》에 의한 경우에는 中畝主는 小作人으로 하여금 《元賭支》를 地主에게 支拂하도록 하고, 中畝主自身은 賭支標에 定한 《中賭支》를 取得하였으며, 그 小作料率은 收穫量이 約 1/4 程度이었다. 《並作》의 경우에 있어서는 收穫量의 《折半》에 達하는 全小作料中에서 《元賭支》를 控除하고 그 殘額을 中畝主가 《中賭支》 또는 《中賭租》로써 取得하고, 《元賭地》는 《賭支》法에서와 같이 小作人으로 하여금 이를 元地主에게 支拂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中畝主가 小作人으로 하여금 直接 地主에게 《元賭支》를 支拂케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은 便宜上 이렇게 하는 것에 不過하고, 元地主와 小作人과는 何等 直接的 關係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地主가 直接 小作人에게 對하여 賭支의 支拂을 請求할 수 없는 것이 慣習이었다고 한다. 또한 小作人은 中畝主의 承諾을 얻지 않으면 土地를 他人에게 轉貸하거나 또는 權利를 讓渡할 수 없었으며, 其他 모든 條件이 普通小作의 小作人과 다를 바 없었다.⁽²⁹⁾

한편 黃海道地方中에서 信川郡 山川面 및 安岳郡 安岳面에서는 《永稅》라고 稱하는 《賭地權》이 發生한 特殊小作慣行이 田畝를 通하여 널리 行해지고 있었다. 이 《永稅》小作에 있어서는 大同江流域의 《賭地》 또는 《轉賭地》와 마찬가지로 小作人이 地主에 대하여 定租法에 의한 一定不變의 小作料를 支拂하고 永久히 그 土地를 耕作하는 小作關係가 形成되었으며, 地主變更의 경우에도 小作人은 그 權利를 新地主에게 對抗시킬 수 있었고, 또한 任意로 그 權利를 賣買 讓渡 抵當 또는 相續할 수 있었으며, 他人에게 轉貸할 수도 있었다. 물론 그 權利의 讓受者도 當然히 이 讓受한 《永稅》小作의 權利를 自由롭게 地主에게 對抗시킬 수 있었다.

《永稅》小作에 있어서의 小作料는 벼와 其他의 穀物等 現物로서 定하는 現物小作料와 金錢으로서 이를 定하여 徵收하는 貨幣小作料가 있었으나, 어느 경우에도 그 小作料額은 低廉하였으며, 地主는 그 小作料額을 增減할 수 없는 것이 慣例이었다. 이러한 《永

(28)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下卷) 參考編『從來ノ朝鮮ノ小作慣行調査資料』p.424.參照

(29)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下卷) 參考編『從來ノ朝鮮ノ小作慣行調査資料』pp. 424—425 參照.

稅》小作에 있어서는 租稅 및 土地의 改良費는 普通 小作人이 이를 負擔하는 것을 慣例로 하고, 大改良은 地主가 費用을 負擔하였다고 한다.⁽³⁰⁾

黃海道地方의 同一地域에서 《賭地權》이 發生한 小作地의 小作慣行을 어떠한 경우에 《中賭地》라고 하고, 어떠한 경우에 《永稅》라고 불렀는가 하는 問題는, 주로 賭地權所有者가 어떠한 階層이 있으며 어떠한 役割과 機能을 遂行하였는가에 따라, 慣習으로 區分된 것이라고 理解된다. 小作地의 實際의 保有者·耕作者가 아닌 地方土豪나 資産家가 賭地權을 獲得하여 이를 一般小作人에게 《轉貸》함으로써 中間地主의 機能을 遂行하면서 小作料를 徵收할 때는 이것이 《中賭地》로서 呼稱되고, 이 《賭地權》을 그 小作地에 대한 實際의 耕作者이며 保有者인 小作人이 所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特히 《永稅》라고 區分하여 呼稱되었던 것으로 推定된다. 그러나 이것은 慣習상으로 混淆되어 實際에 있어서는 그렇게 確然하게 區分된 것은 아니었다.⁽³¹⁾

黃海道地方의 이러한 《中賭地》와 《永稅》의 小作慣行은 李朝末期까지는 廣範圍하게 盛行하였으나, 日帝治下에서는 急激히 消滅되었으며, 特히 永稅는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도록 完全히 消滅되었다고 報告되고 있다.⁽³²⁾

4. 全羅北道 全州地方의 禾利

全羅北道 全州 參禮 井邑地方에서는 小作人이 自己의 小作地에 대하여 地主의 土地所有權에 對抗시킬수 있는 一定의 強大한 權利를 가지고 地主의 承諾없이 任意로 그 權利를 賣買할 수 있는 田畝이 있었던 바, 이러한 特殊한 小作慣行을 이 地方에서는 《禾利》(또는 花利)라고 부르고 이러한 小作慣行이 行해지는 土地를 《禾利付畝(田)》이라고 稱하였으며, 그 權利의 賣買를 《禾利賣買》라 稱하였다⁽³³⁾.

(30)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下卷) 參考編『從來ノ朝鮮ノ小作慣行調査資料』p. 428參照.

(31) 實際로 《中賭地》에 있어서도 耕作者가 賭地權을 갖는 경우가 많았고, 한편 《永稅》에 있어서도 賭地權을 가진 小作人이 이를 一般小作人에게 轉貸하여 《中畝主》의 機能을 遂行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賭地權》의 小作慣行이 同一地域에서 相異한 呼稱으로 區分된 것은 《中賭地》가 주로 《宮房土》에서 發生하여 처음부터 賭地權者가 中間地主로 介介된 데 대하여 民田에서 發生한 《賭地權》小作을 區分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그 權利의 強度面에서 볼때는 《中賭地》가 《永稅》보다 그 所有權의 性格이 더욱 강한 것 같으나 資料가 극히 制限되어 自信있는 推定을 내릴 수 없다. 宮房田의 小作慣行과 關聯하여 앞으로 더욱 깊이 檢討하여 보아야 할 課題이다.

(32)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下卷) 參考編『從來ノ朝鮮ノ小作慣行調査資料』p. 429參照.

(33) 《禾利》(花利)에 대해서는 地方에 따라 慣習상으로 概念이 相異하다. 禾利(花利)의 原義는 『大典會通』 戶典收稅條에 「如佃夫冒告災傷 及 當該吏 勸農官 書員 通同妄冒者 許人陳吉 一負各苦一十 每一負加一等 罪止杖一百充軍 其妄冒田給陳告人 花利八官」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花利는 土地로부터 나온 產出物, 또는 그 產出物을 販賣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떤 地方에서는 이 用語가 變化되어 다른 概念으로 使用되었다. 全羅南道 珍島地方

이 <禾利>小作慣行에 있어서의 小作人의 權利는 앞서 본 <原賭地> <賭地> <轉賭地> <中賭地> <永稅> 등에 있어서의 <賭地權>과 類似한 性質의 것이었다.

<禾利付畝(田)>에 있어서는 小作人은 그 <禾利>의 權利를 地主의 承諾을 要하지 않고 自由롭게 賣買 讓渡 抵當 相續할 수 있었으며 또한 他小作人에게 轉貸할 수 있었다. 특히 <禾利>의 賣買와 相續은 매우 盛行하였다. 물론 禾利의 權利를 買受한 者는 當然히 이를 地主에게 對抗시킬 수 있었으며, 또한 地主가 變更되는 경우에도 小作人은 秋毫의 影響도 받지 않고 그 權利를 新地主에게 對抗시킬 수 있었다. 地主가 小作人을 變更하고자 하거나 <禾利>의 權利를 消滅시키고자 할 때에는 먼저 小作人의 同意를 求하여 그 權利를 買收하지 않으면 안되었다.⁽³⁴⁾

<禾利付畝(田)>에 있어서의 小作料의 徵收方法은 <賭地法>에 依據하였으며 賭地法中の 定租法과 執租法이 모두 行해졌으나 그 중에서도 <定租>가 支配的이었고 <執租>는 매우 드물게 行해졌다⁽³⁵⁾. 그러나 그 小作料率은 普通小作에 있어서의 小作料率보다 低廉하였으며 豊凶에도 不拘하고 地主와 小作人 兩側이 서로 小作料의 增減을 要求할 수 없는 것이 慣例이었다.⁽³⁶⁾

이러한 <禾利> 小作은 李朝末期에는 이 地方外에도 慶尙道 全羅道 各地의 驛屯土에서 行해졌으며 當時에는 그 小作地面積도 廣大하였고 <禾利>의 權利를 가진 小作人數도 相當數에 達하였으나, 日帝下에서는 이것이 急激히 消滅하여 1920年頃에는 이미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5. 慶尙南道 固城 및 晉州地方의 並耕

慶尙南道 晉州郡 金谷面 및 固城郡 永吾面 永縣面 等地에서는 普通小作과는 다른 <並耕>(또는 併耕)이라는 特殊한 小作慣行이 廣範圍하게 行해졌으며, 固城郡의 介川面 九萬面 馬岩面 上里面 下一面 下二面地方에서도 이 <並耕>小作이 點在하였다. 李朝末期에는 이 地方의 <並耕>小作人은 千數百人에 達하였고 <並耕>小作地面積은 五六百町步에 達하였다고 報告되고 있다.⁽³⁷⁾

에 있어서는 小作料를 禾利 또는 花利라고 稱하였으며 全羅北道 南原地方 및 咸鏡南北道 一帶에서는 小作料의 前納形式을 가진 小作을 禾利 또는 禾利賣買라고 불렀다. 全羅北道 全州地方에서는 小作人이 自己의 小作地에 대하여 特殊한 權利를 갖는 小作을 <禾利(또는 花利)>라고 불렀으며 그 權利의 賣買를 禾利賣買라고 稱하였다.

(34)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下卷) 參考編『從來ノ朝鮮ノ小作慣行調査資料』p. 433.

(35)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上卷) p. 795.

(36)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下卷) 參考編『從來ノ朝鮮ノ小作慣行調査資料』p. 434—435.

(37)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上卷) p. 779—780. 參照.

이 《並耕》小作에 있어서는 小作人은 自己의 小作地에 대하여 一定의 權利를 갖는 바, 이 權利는 自己의 小作地를 永久히 耕作할 수 있고, 諸負擔을 輕減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權利를 地主의 干涉을 받음이 없이 自由로이 賣買 讓渡 抵當 相續 轉貸할 수 있는 權利이었다⁽³⁸⁾. 이 地方에서는 이러한 《並耕》小作의 小作人을 《並耕主》라고 불렀으며, 이러한 小作關係를 《並耕(併耕)》이라고 稱하였다.⁽³⁹⁾

이러한 《並耕》小作에 있어서의 《並耕主》의 權利는 永久的인 것이기 때문에 地主가 變更되는 경우에도 이를 新地主에 對抗시킬 수 있었다. 또한 並耕主가 그 權利를 任意로 他人에게 賣買 讓渡하는 경우에 그 權利의 繼承者는 當然히 이를 地主에게 對抗시킬 수 있었다. 또한 《並耕》小作關係의 解除에 있어서도 《並耕主》인 小作人은 이를 언제라도 解除할 수 있는 反面에 地主는 任意로 이를 解除할 수 없었고 地主가 만일 그 解除를 願하는 경우에는 小作人의 同意를 求하여 먼저 相當의 代價를 支拂하고 그 並耕權을 買收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오직 例外的으로 特約으로써 《並耕》解除의 事由를 定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事由가 發生하는 경우에 限하여 그 解除를 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並耕》小作에 있어서의 小作料의 徵收方法은 《賭地法》中の 《定租法》과 《執租法》이 주로 行해졌으며 小作料額은 生産量의 50%를 標準으로 하였다고 報告되고 있다. 그 小作料率이 普通小作에 있어서의 小作料率 보다 特히 低廉하였다는 記錄은 나와있지 않으나 定租法이 實施된 것으로 보아 若干 低廉한 것이 아니었는가 推定된다.⁽⁴⁰⁾ 그러나 普通小

(38) 물론 《並耕權》의 轉貸도 이를 自由로이 行할 수 있었으나 이 地方에서는 耕作地의 不足과 小作農人口過剩으로 말미암아 轉貸는 실제로는 行해지지 않고 並耕主의 直接的 耕作이 行해졌다고 한다. 即 並耕權은 轉貸를 通하지 않고 耕作者의 特殊한 權利로 成長하였으며 주로 賣買와 相續이 盛行하였다.

(39) 이 《並耕》小作이 行해진 地方에서는 特殊한 慣習用語가 많다. 이 地方에서는 自作地를 《親耕》이라고 부르고 自作農을 《親耕主》라고 불렀으며, 이에 대하여 小作人의 並耕權이 發生한 小作을 《並耕》, 그 小作人을 《並耕主》라고 불렀다. 또 土地面積을 表示하는 慣用語인 斗落의 半分の 面積을 이 地方에서는 《化名》이라고 부르고 斗落을 《實種》이라고 불렀다. 또한 並耕權 賣買의 價格은 《並耕價》라고 불렀으나 때로는 《賭地價》라고도 稱하였다.

(40) 小作農의 《賭地權》이 成長한 모든 地域의 小作料率이 普通小作의 小作料率에 比하여 훨씬 低廉하였다는 事實이 누누히 報告되고 있으나, 오직 이 地方의 《並耕》小作에 있어서만 그러한 報告가 없고 단순히 小作料額이 生産高의 50%를 標準으로 하였다고만 報告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並耕權》을 《賭地權》으로 부르고, 《並耕價》를 《賭地價》라고도 부른 것으로 보아, 이 地方의 《並耕》小作에 있어서도 李朝末期에는 小作料率이 普通小作에 比하여 훨씬 低廉하였다가 日帝治下에서 生産量의 50%로 上昇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李朝末期에는 並耕權의 賣買價格이 地價의 1/2까지 될만큼 高額이었다가 日帝初期에는 地價의 1/5內外로 下落하였다는 調查報告는 이러한 事實과 關聯된 것이 아닌가 推定되는 것이다. 李朝末期의 資料가 不充分하여 그 以上の 實證의 資料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問題이다.

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小作料以外的 小作農의 各種負擔은 이 《並耕》小作에 있어서는 小作人의 權利가 強大하여 이를 行하는 일이 없었다고 報告되고 있다.⁽⁴¹⁾

並耕權의 賣買는 반드시 《文記》를 作成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賣買價格은 李朝末期에는 그 最高價格이 地價의 50%까지 達하기도 하였으나 日帝初期에는 그것이 地價의 約 20% 程度이었다고 報告되고 있다. 이것은 《並耕》小作料의 小作料率이 日帝治下에서 50%이었다는 事實과 關聯하여 볼 때 日帝治下에서의 《並耕權》의 弱화가 그 賣買價格을 下落시킨 것이 아닌가 推定된다.

이러한 《並耕》小作도 日帝治下에서는 急激히 消滅하여, 1910 年代初에 이미 漸次減少되었으며 1929 年頃에는 이 《並耕》小作慣行은 거의 모두 消滅되고 그 자취를 겨우 찾아볼 수 있는 정도에 不過하였다고 報告되고 있다.⁽⁴²⁾

지금까지의 事例는 日本人들의 小作慣行調查報告書들에 依存하여 그 代表的인 것을 추려 본 것이다. 日本人들의 調查資料는 그들의 植民政策上의 目的에 따라 普通小作의 小作料問題를 中心으로 하여 調查한 것이기 때문에 이 小作農의 《賭地權》이 發生한 小作慣行에 대해서는 調查自體가 매우 粗疎하고 不充分하여 우리가 알고싶은 것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日帝治下 1930 年의 各道別 小作慣行調查에서는 《賭地權》이 發生한 小作慣行이 序章에서 지적한 全國 모든 地域에서 아직도 그 자취를 남기고 있음을 報告하고 있다.⁽⁴³⁾ 이것은 日帝治下에서 消滅되었다고는 하나, 이러한 小作慣行이 李朝後期부터 末期까지에는 全國에 걸쳐 마치 無數한 點과 같이 發生하여 成長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普遍的 現象으로 變化해가고 있었음을 間接적으로 示唆해주는 것이다.⁽⁴⁴⁾

우리는 貧弱한 日帝調查資料들을 가지고서도 그들이 《永小作》이라고 獨斷적으로 處理하여 버린 小作慣行 속에서 李朝末期의 社會經濟的 變化和 耕作農民의 成長을 찾아볼 수 있으며 日本人들이 심어놓은 先入見을 排除하고 歷史的 事實에 대하여 새로운 解釋을 開拓할 수 있다.

(41)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上卷) p. 784 參照.

(42)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下卷) 參考編『從來ノ朝鮮ノ小作慣行調查資料』p. 440 參照.

(43)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上卷) p. 800—805의 表 參照.

(44) 李朝後期—末期에 걸치는 當時의 우리나라文獻에서 이 《賭地權》이 發生한 小作慣行의 仔細한 內容을 發見할 수 있게되면 이러한 事實은 더욱 確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民間에서 行해진 새로운 小作慣習이 어느정도 詳細히 記錄에 남겨졌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나 이것을 發見하여 當時의 資料로서 實證하는 것은 앞으로의 課題이다. 그러나 日帝의 資料로서도 그 基本的 構造와 全般的 變動過程을 推定하는 것은 可能하며 새로운 解釋을 樹立하는 資料로서 使用될 수 있다.

Ⅲ 賭地權의 起源과 小作農의 下級所有權의 成長

1. 賭地權의 起源

李朝末期에 全國을 通하여 廣範圍하게 나타난 小作農의 <賭地權>은 어떻게하여 發生한 것이며 그것은 어떠한 社會經濟的 變化와 關聯된 것인가? 小作農의 <賭地權>은 어떠한 性格의 것이며 그것은 어떻게 展開되었는가?

小作農의 自己의 小作地에 대한 賭地權 發生의 起源에 대하여 日本人들의 調査資料는 주로 現地調査에서의 古老와의 對談을 具體的으로 옮겨 記述하고 있다.

예컨대 鴨綠江流域의 威化島의 경우, 이 地域은 元來 國防上の 嚴令地로서 土地肥沃하여 일찍부터 移住墾耕하는 者가 많았으나, 1461年(世祖 6年)에 이르러 移住民이 野人の 捕虜가 된 일이 있어 朝廷에서 이 地域에의 移住墾耕을 禁止하여 오다가 1810年(純祖 10年)에 朝廷이 許民開墾할 때 그 開墾作業過程에서부터 <賭地權>이 發生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賭地權 發生의 契機에 대해서는 資料에 따라 약간의 差異가 나타나고 있다. 어떤 資料에서는 “小作人의 開墾의 勞力과 費用에 對한 報償”⁽⁴⁵⁾으로서 賭地權이 發生하였다고 하고, 또 다른 資料에서는 “小作人의 競爭이 심하여 小作人이 되고자하는 者는 地主에게 代價를 支拂하고 永代耕作權을 買收”⁽⁴⁶⁾하여 賭地權이 發生하였다고 보며, 다른 곳에서는 그 兩者의 原因에 다같이 근거하여 賭地權이 發生하였다고 보고 있다.⁽⁴⁷⁾

한편 日帝朝鮮總督府의 다른 資料는 現地住民의 傳言이라하여 다음의 두가지 發生起源을 記述하고 있다.⁽⁴⁸⁾

첫째, 一部の 賭地는 李朝純祖때 義州府尹 趙興鎭이 威化島 開墾에 留意하여 屢屢히 當時의 朝廷에 奏請한 結果 드디어 開墾과 居住가 許可되었는 바, 그 起墾의 方法은 官이 土地拂下를 行하고 이를 받은 者가 耕作希望者에게 開墾시키어 그 起墾者의 勞力과 費用에 대한 報償으로서 賭地權을 認定함에 의한 것.

(45) 朝鮮總督府調査資料 第26輯『朝鮮の小作慣習』p. 85. 이 資料에서는 威化島의 無主地를 附近人民들이 일찍이 先占하여 分割하였기 때문에 그 後 이 荒蕪地를 開墾한 者가 先占者때문에 所有權을 獲得할 수 없게되고 또한 한편으로 先占者는 開墾할 資力이 없었으므로 開墾者에게 永代耕作의 權利를 賦與하게 되었는 바 開墾者는 先占者의 荒蕪地를 自己의 費用과 勞力을 投入하여 開墾하였으므로 그 權利를 自由로 處分할 수 있다는 思想이 發達하여 드디어 그 權利를 賣買하는 慣習이 發生하였다고 쓰고있다.

(46) 朝鮮總督府『慣習調査報告書』p. 133.

(47) 朝鮮總督府中樞院『小作ニ關スル慣習調査書』p. 44.

(48)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上卷) p. 713.

둘째, 다른 一部分의 賭地는 地主가 開墾을 遂行하였으나 그 費用의 補填을 위한 金錢이 必要하여 小作人으로부터 이를 徵收하고 (또는 小作人이 地主로부터 그 永代耕作權을 買收하는 形式으로) 賭地權을 認定한데서 起因하였다는 것.⁽⁴⁹⁾

또한 鴨綠江流域의 義州郡 光城面 및 楊西面地方의 賭地權의 發生起源에 대해서도 現地 調査를 통하여 이 地域의 <<賭地權>>이 調査當時(1930年)로부터 어떤 것은 140—200年, 또는 다른 경우는 50—120年前에 發生하였다고 推定하고, 鴨綠江의 氾濫과 逆流水로 말미암아 생긴 河川流域의 荒蕪地에서 다음과 같은 原因에 의하여 賭地權이 發生하였다고 記述하고 있다.⁽⁵⁰⁾

(1) 地主가 自己의 勞力과 費用으로써 防水堤를 築造하고 小作人이 스스로 開墾케 한

(49) 이 資料는 또한 官이 荒蕪地拂下를 할 때 有償拂下를 한 경우와 無償拂下를 한 경우를 想定하여 다음의 範圍內에서 賭地權이 發生하였으리라고 推定하고 있다.(同上 p. 714).

賭地	{	有償拂下한 것	{	① 小作人의 勞力 또는 投資에 의한 開墾	} 小作人의 勞資報償으로서 賭地權認定 地主의 投資補填其他를 위하여 小作人으로부터 金錢을 徵收하고 賭地權을 認定
		② 地主의 投資와 小作人의 勞力에 의한 開墾		③ 地主의 投資 또는 勞力에 의한 開墾	
無償拂下한 것	{	① 小作人의 勞力 또는 投資에 의한 것	} 小作人의 勞資報償으로서 賭地權을 認定 地主의 投資補填其他를 위하여 小作人으로부터 金錢을 徵收하고 賭地權을 認定		
② 地主의 投資 및 小作人의 勞力에 의한 것		③ 地主의 投資 또는 勞力에 의한 것			

또한 이 資料는 1907年에 土地所有者가 一口耕의 水害地의 復舊起點을 위하여 土地開墾費 50兩을 徵收하고 賭地權을 賦與(放賣)하는 文記의 實例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同上 p. 721).

隆熙元年 四月二十日 金世龍處明文

右明文事段自己得田伏在於古城面新島洞西邊具矣다가戊子漲發江落田今春遷起田壹日畊庫四標段東西二方金和善賭地田南浦北大江四標分明遂於起墾之料錢文五拾兩棒上立賭地右人處永遠放賣許給之意至如是成文記日後被此難言則持此文記下政事

賭地成立主 金學鳳 印(以下略)

(50) 朝鮮總督府 『朝鮮ノ小作慣行』(上卷). pp. 723—724. 이 資料는 또한 賭地權發生의 原因과 關聯하여 이 地方에서의 賭地는 두가지 種類가 區別되었다고 報告하고 있다. 卽 그 첫째의 것은 위에서 賭地權發生 原因의 (1)에 起因하는 것으로서 小作人自身의 耕地가 될 部分의 開墾만을 하여 獲得한 賭地權으로서 이를 <<반賭地>>라고 稱하였다고 한다. 그 둘째의 것은 賭地權發生原因의 (2), (3), (4), (5)에 起因하는 것으로서 小作人이 自身의 耕地가 되는 部分의 開墾을 하면서 또한 地主의 築堤事業에 대해서도 無償勞役을 提供하고 또는 그 費用의 一部를 負擔하여 賭地權을 獲得하는 것으로서 이를 <<原賭地>>라고 稱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原賭地>>라는 用語는 一方 古來로부터 社會的으로 公認되어온 原來의 取得의 賭地도 指稱하였는 바, 普通 <<原賭地>>라고 稱하는 것은 위의 두가지 種類를 包括하는 原來의 賭地를 指稱하는 것이 普通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반賭地>>는 이를 <<原半賭地>>라고 稱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반賭地>>이든 <<原賭地>>이든 그 權利者인 小作人의 地主에 대한 權利關係에는 何等の 輕重이 없었다. 賭地權發生原因의 (6)은 극히 例外的인 것이었다고 推定된다.

에서 起因한 것.

(2) 地主가 防水堤를 築造한데 對하여 小作人이 無償勞役을 바치고 小作人이 스스로 開墾한데서 起因한 것.

(3) 地主가 小作希望者로부터 金錢을 徵收하여 防水堤를 築造하고 小作人이 스스로 開墾한데서 起因한 것.

(4) 地主가 自己의 費用으로써 築堤하고 小作人이 스스로 開墾을 完成한 後에 地主가 小作人으로부터 金錢을 徵收한데서 起因한 것.

(5) 地主가 自己의 勞力과 費用으로써 築堤開墾한 土地의 耕作權을 永代賣却한데서 起因한 것.

(6) 地主의 防水堤의 築堤에 當하여 이의 工事監督에 從事해서 그 報酬로서 賭地權을 獲得한 것.

이 외에도 義州·龍川地方에서는 小作人이 特別한 投資를 하지 않고 《原賭地》를 橫倣하여 驛屯士 郷校所有地 私有地 등에서 賭地權을 成立시켜 이를 《私賭地》 《假賭地》 《小賣賭地》라고 稱하면서 그 賭地權이 賣買되었음을 報告하고 있다.⁽⁵¹⁾

大同江沿岸에 있어서의 賭地權 發生의 起源도 鴨綠江流域의 경우와 大同小異하다. 日帝의 한 資料는 大同郡 一帶의 賭地權의 起源에 대하여 “小作人이 그의 費用으로써 他人의 所有하는 泥生地 또는 陳荒地를 起墾하고 또한 水害豫防을 위하여 築堀에 助力한 것 等에 因하여 發生하였다”⁽⁵²⁾고 쓰고 있다. 또한 中和郡一帶의 賭地權發生에 대해서는 “當初 借地人이 地主와의 契約에 의하여 그의 費用으로써 水害를 豫防하기 위한 堀을 築하고 또한 泥生地 荒無地等を 起墾한데 因하여 發生하였다”⁽⁵³⁾고 記述하고 있다. 이 調査資料는 大同江沿岸의 賭地權 發生이 ①開墾과 ②築堤에 起因하였다고 報告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日帝의 다른 調査資料는 이 地方의 現地調査에서의 住民의 口傳을 綜合하여 賭地權 發生의 起源을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⁵⁴⁾

(1) 地主가 築堤하고 小作人이 小作地의 分配를 받아 스스로 開墾함에 起因한 것.

(2) 地主가 計劃하고 小作人이 共同 (또는 地主와 共力)으로 築堤해서 小作地의 分配를 받아 小作人自身이 開墾한데 起因한 것.

(51)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上卷) p. 717 參照

(52) 朝鮮總督府中樞院『小作ニ關スル慣習調査書』p. 63.

(53) 朝鮮總督府中樞院『小作ニ關スル慣習調査書』p. 101.

(54)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上卷) p. 732.

(3) 地主가 築堤한 土地를 小作人이 開墾한 뒤에 다시 地主가 對價를 徵收하여 永代小作을 約定한 것.

(4) 地主가 耕作希望者로부터 代價를 徵收하여 永代小作을 約定한 것.

(5) 土地를 比較的 低廉하게 賣却하여 永代小作權을 保留시킴에 起因한 것.

(6) 小作人의 逃亡으로 因한 小作料未納을 防止하기 위하여 擔保金を 徵收한 것, 또는 前小作人이 逃亡한 것을 新小作人이 小作을 希望하여 損害를 代償시킨 데서 濫賜한 것.

여기서는 <開墾>과 <築堤> 以外에 다시 小作人의 賭地權 <買收>가 중요한 要因으로 指摘되고 있다.⁽⁵⁵⁾

그러나 黃海道地方의 <中賭地> 發生의 起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본 것과는 다른 若干의 差異에 대하여 注意를 기울일 必要가 있다. 日帝調査資料는 <中賭地> 發生의 起源을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此種의 小作關係는 元宮房이 그 所屬土地를 開墾하고, 或은 水害豫防을 위한 堤防을 築하는 者에 대하여 報酬로서 前記의 權利를 認容한데서 起因하며, 後에 其他 土地에 付하여서도 그宮房所屬의 土地는 一般民有地에 比하여 借地料가 低廉하므로 借地人이 스스로 耕作하지 않고 이를 他人에게 轉貸하여 中間利益을 得하는 者가 있기에 이르렀고, 드디어 民有地에 있어서도 地主가 遠隔地에 居住하고 또한 借地料가 低廉한 土地에 있어서는 借地人이 이를 他人에게 轉貸하여 借地料의 差額을 利得하는 者가 있기에 이르렀으나 地主는 別로 이를 禁止하지 않고 放任한 結果 困襲이 오래되어 드디어 中賭地라는 特種의 借地慣行을 生하고 中畚主라고 稱하는 地主와 小作人間에 介在하는 借地人에 대하여 特種의 權利를 認定하기에 이르렀다.”⁽⁵⁶⁾

黃海道 地方의 <中賭地>의 賭地權은 처음은 開墾과 築堤의 報酬로서 發生하여 小作農의 權利로 成長하였으나, 後에는 資産있는 土豪가 처음부터 中間小作料(<中賭支> 또는 <中支定>)의 徵收를 目的으로 宮房土를 開墾함으로써 주로 中畚主의 權利로서 轉化되어 展開된 것이 特徵的인 事實이다.

다음 全州地方의 <禾利>의 起源에 대해서는 現地住民의 傳言을 調査하여 다음의 다섯

(55) 朝鮮總督府의 이 調査資料는 大同江沿岸의 賭地發生의 原因을 分類하여 위의 여섯가지 原因中 (1)(2)를 <開墾賭地>(3)을 <開墾賭地>와 <買收賭地>의 混合, (4)를 <買收賭地>, (5)를 <保留賭地>라고 하고 (6)은 중요하지않은 異例的인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중에서 開墾賭地와 買收賭地가 大部分이라고 쓰고 있다. 이 資料에서는 <賭地權>을 永代小作이라고 規定하여 이 用語를 使用하고 있으며, 本文에서는 이 資料의 引用임으로 이를 批判하지 않고 그대로 轉載하였다.

(56)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下卷)參考編『從來ノ朝鮮ノ小作慣行調査資料』p. 418.

가지 경우가 檢討되고 있다.⁽⁵⁷⁾

(1) 約 150 餘年前(調査當時로부터)에 凶作을 當하여 小作人이 地稅 小作料를 納付하지 못하고 逃亡離散하는 者가 생기자 新小作者가 地稅나 小作料를 豫納하고 小作을 시작하였으므로 地主가 그 小作人의 前納地稅나 小作料의 代價를 賠償하지 않는 限 小作人의 一定의 權利를 認定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것이 賣買되어 ≪禾利≫慣行이 發生하였다는 說.

(2) 大洪水를 當하여 堤防이 破壞되고 小作地가 荒廢하게 되었기 때문에 逃亡離散하는 小作人이 많이 생기자 新小作人이 未納小作料를 前納하거나 또는 水害復舊를 하거나, 또는 水害復舊의 費用의 幾分을 負擔함으로써 禾利慣行이 發生하였다는 說.

(3) 驛土의 小作料는 一般小作料에 比하여 低廉하였을 뿐 아니라 他負擔이 免除되었으므로 小作人이 그 耕作權을 買得하거나 또는 吏族이 이를 買收하여 小作人에게 轉賣한데서 起因하였다는 說.

(4) 約 200 年前(調査當時로부터)에 이 地方에 廣大하게 存在하였던 未墾地를 小作人이 自己의 勞力과 費用으로써 開墾하였기 때문에 禾利慣行이 發生하였다는 說.

(5) 土地所有者가 小作地의 永久耕作權을 販賣하고 小作人이 이를 買入함으로써 禾利慣行이 發生하였다는 說.

한편 晉州·固城地方의 ≪並耕≫의 起源에 대해서 한 調査資料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此種의 小作關係는 當初 小作人이 地主에게 相當價格을 支拂하고 小作權을 買收하거나 또는 地主와의 契約에 의하여 地主가 土地를 購入하는 경우 地價의 一部를 負擔하여 그 權利를 獲得하는 것으로서, 普通小作에 있어서의 地主와 小作人과의 關係와는 크게 그 權利關係를 달리하는 것이었다.”⁽⁵⁸⁾

또한 다른 調査資料는 이 地方의 現地調査를 通하여 住民의 傳言을 蒐集한 다음 이並耕이 調査當時로부터 100—200 年前에도 存在한 實證資料를 들고 住民의 傳言으로는 무려 400 年前으로도 遡及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發生의 起源에 대하여 다음의 다섯가지 要因

(57)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上卷)pp. 797—798 및 (下卷)參考編 p. 432 參照. 그러나 이 資料는 이 地方의 ≪禾利≫慣行 發生의 起源에 대하여 위의 다섯가지 要因中에서 (1)說은 大凶에 의한 地稅 또는 小作料의 代價이 發生要因이라면 그 行해진 範圍가 狹少한데 疑問이 생기고, (2)說은 實地調査에서 禾利畚에서 堤防의 痕跡이 잘 發見되지 않고, (4)說은 交通이 發展한 古來의 都邑인 全州地方에서 未墾地가 그때까지 廣大하게 存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5)說은 單獨原因으로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들의 綜合考察이 必要할 것이라고 指摘하고 있다.

(58)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下卷)參考編『從來ノ朝鮮ノ小作慣行調査資料』p. 435.

을指摘하고 있다.⁽⁵⁹⁾

(1) 土地所有者가 金錢의 必要가 생기어 <並耕權>을 所有權으로부터 切離하여 賣却한 데 起因한 것.

(2) 地主의 土地買收에 小作人이 幾分の 資金을 出資하여 <並耕權>을 獲得한데 起因한 것.

(3) 自己의 所有地를 低廉하게 賣却하고 <並耕權>을 保有한데 起因한 것.

(4) 官吏의 苛劔誅求 때문에 權門豪族에게 所有地를 投托하거나 또는 그에 沒收되어 <並耕權>만을 保有한데서 起因한 것.

(5) 小作地를 永年小作하는 동안에 小作人이 耕作權을 他人에게 賣却하여 그것이 <並耕權>이라고 稱하게 된데서 起因한 것.

日本人들의 調査資料가 報告하고있는 이상과 같은 賭地權發生의 起源은 住民의 傳言을 蒐集하여 그 具體的 事例를 提示한 것으로서 그 起源의 事實의 一端을 說明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充分치 않다.

우리가 注目하려고 하는 것은 이상과 같은 具體的 事例를 發生케 한 보다 本質的인 起源 즉 小作農의 賭地權發生의 社會經濟的 原因을 追跡하려고 하는 것이다.

具體的 事例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開墾> <築堤> <買收> 其他 여러가지 事情에 의하여 小作人이 特定の 勞動이나 資金을 小作地에 投下하였을 경우에 賭地權이 發生하였다는 事實이다. 그러나 小作人의 이러한 經濟行爲가 賭地權形成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當時의 다음과 같은 社會經濟的 變化를 背景으로 한 것이었음을 注目하여야 하며 이것을 認識하는 것이 賭地權 發生의 起源을 더욱 本質的으로 把握하는 것이 된다.

첫째로, 賭地權은 李朝後期の 小作制度에 있어서 <經濟外的 強制>(ausseroekonomische Zwang)가 顯著히 解體되어 나가고 經濟的 關係가 強力하게 浸透하기 시작한 社會變化를 背景으로 하여 發生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만일 地主가 小作人에 대하여 直接的인 身分의 規制를 加할 수 있었다면, 예컨대 水害防止를 위한 堤防築造나 水害地開墾에 小作人을 動員하였다고 해서 그 報償으로 賭地權을 認定해 주지 않았을 것이며, 小作人도 자기의 勞動力 또는 資金投入의 代償으로서 賭地權 成立을 主張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地主는 小作人을 農奴로써 取扱하여 水害地復舊나 廢土地開墾에 無償으로 動員할 수 있었

(59)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上卷) p. 782 參照. 이 資料는 위에는 <並耕權>發生의 다섯 가지 起源中 (1)(2)(3)은 舊文記에서 이를 實證할 수 있었다고 報告하고 그 文記의 例를 提示하고 있다. 同上 pp. 782-789 參照.

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7,8世紀부터 地主制度에 있어서의 身分的 關係는 뚜렷이 解體되기 시작하고 經濟的 關係가 小作制度에 浸透하여 들어가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이 小作農으로 하여금 《賭地權》을 獲得할 수 있게 한 社會經濟的 條件을 形成하여 준 것이다. 이 時代에는 小作制度內에서 傳統的으로 《奴婢》 身分層인 小作農이 그 地位를 顯著히 向上시킨 結果, 地主는 小作人을 自己의 奴婢로서 取扱할 수 없었으며 小作人은 經濟的 契約關係를 小作制度에 導入하기 시작할 수 있었다.⁽⁶⁰⁾ 또한 반드시 兩班身分層만이 地主가 된 것이 아니라 《良人》 身分層도 地主로 되어 地主가 반드시 封建貴族이어야 한다는 身分的 制約도 崩壞되었다. 특히 良人과 小作農이 小作關係에 들어갔을 때 또는 良人과 良人이 小作關係에 들어갔을 때에는 《經濟外的 強制》는 顯著히 消滅되고 經濟的 契約關係가 支配하였다. 小作農의 賭地權이 특히 이와같이 良人層이 地主로 되는 경우에 더욱 堅固하게 成長하였다는 것은 意味深長한 것이다.⁽⁶¹⁾

우리는 李朝後期 17,8世紀에 顯著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小作農의 《賭地權》發生이 古來의 小作制度의 한 類型으로서가 아니라 封建的 身分制度의 崩壞過程에서 小作農의 身分的 및 經濟的 地位向上의 一形態로서 發生한 動態的이고 一般的인 土地所有 形態의 變化의 一環이라는 事實에 注目하는 것이다.

둘째로, 李朝後期에 있어서의 小作人의 《賭地權》의 發生과 成長은 이 時代의 貨幣의 全國的 流通 즉 貨幣經濟의 成長과 關聯되어 나타난 것이다. 貨幣의 流通은 封建的 身分制의 解體를 刺戟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地主와 小作人의 經濟關係를 《貨幣》로써 測定케 하여 合理的 計算을 可能케 하고 地主와 小作人의 合理的인 契約關係의 成立과 小作人의 耕作地에 對한 權利의 強化를 可能케 하는 條件을 形成하여 주었다.

小作人이 地主의 所有인 荒無地를 《開墾》하거나 水害地의 堤防을 築造하는 경우에 投入한 《勞動》은 貨幣로 計算되어 地價와 對比하여 秤量한 만큼의 《賭地權》의 成立으로서 그 報償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小作人이 그 《費用》을 一部 負擔하는 경우에도 이

(60) 물론 이 時代에도 如前히 隸屬의 奴卑狀態로서의 小作農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一般的인 小作形態는 身分的 規制를 緩히 解體시키고 地主와 小作人間의 契約에 의하여 遂行되었다. 예컨대 그 祖先이 奴卑이었던 小作人은 반드시 自己主人의 土地를 小作할 必要가 없었으며 契約에 의하여 自由로 이 他人의 小作人으로서 되는 일이 매우 많았다.

(61) 小作人의 《賭地權》은 地主가 兩班層이거나 良人身分層의 어느경우에도 發生하였다. 그러나 身分的 規制가 比較的크게 作用한 慶尙南道 晉州·固城地方보다 良人層이 地主로 되어 있던 平安道의 大同郡一帶에서 더욱 強力한 小作人의 權利로 成長한 것은 결코 地理的 要因이나 偶然的인 事實에 起因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基本的으로 地主制度에 있어서의 身分的 規制의 解體의 程度와 關聯된 것이다.

것은 直接 貨幣支出이 되어 <賭地權> 成立을 可能케 하였다. 뿐만 아니라, 地主가 土地를 購入할 때 小作人이 그 土地價格의 一定分을 負擔하거나 또는 地主로부터 小作地에 대한 一定의 權利를 <賭地權>으로 <買收>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直接的으로 <貨幣> 去來에 의하여 賭地權을 成立시키는 것이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發見된 全國各地의 數 많은 <賭地權> 賣買의 <文記>가 모두 <貨幣>로서 賭地權이 賣買되었음을 記述하고 있다. 이 事實은 李朝後期에 全國的으로 貨幣가 流通되었음을 證明하는 하나의 資料가 될과 同時에 또한 賭地權이 貨幣의 成長과 關聯되어 發生 成長한 것이라는 事實을 證明하는 資料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賭地權이 發生한 小作料의 形態가 일찍부터 <貨幣小作料>가 많았으며 <定租法>이 많았다는 事實도 결코 偶然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李朝 封建制의 解體過程에서 擡頭한 小作人의 <賭地權>이 貨幣經濟의 成長과 關聯하여 成長하면서 當然히 地代形態를 生産物地代로부터 貨幣地代로 轉化시키고 小作料額을 切減시켜나가는 이른바 耕作農民의 밑으로부터의 成長에 의한 土地所有制度의 <近代>에로의 發展過程의 一側面을 나타내는 것으로 理解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우리가 注目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小作農의 <賭地權>이 最初에는 各地方에서 開墾 築堤 또는 買收를 通하여 小作人이 一定의 <勞動>이나 <費用> 또는 <貨幣>를 支拂함으로써 發生하였으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음에는 小作人이 어떠한 勞動이나 費用도 支拂하지 않고서도 賭地權을 獲得하여나간다는 事實이다.

日本人들의 調査資料는 이미 賭地權이 發生한 地域附近의 驛屯土와 一般民有地에서 <賭地權>을 模倣하여 公公然히 <私賭地>를 形成시키고 이를 自由로이 賣買하여 地主에게 많은 弊害를 주고 있었다고 記述하고 있다. 이것은 鴨綠江流域의 <原賭地>로부터 大同江流域의 <賭地>, 黃海道地方의 <中賭地> 全州地方의 <禾利>等 各地의 調査報告에서 指摘되고 있다.⁽⁶²⁾

이것은 身分的으로 점차 自由로워가는 小作農이 地主에게 特別한 代價를 支拂함이 없이

(62) 예컨대 鴨綠江流域의 경우를 들면 “義州 龍川地方에 있어서는 原賭地外에 驛屯土 鄉校有土地 私有地(不在地主)等의 小作人이 原賭地를 模倣하여 地主의 監督이 嚴重하지 않음을 奇貨로 私私로이 小作權을 賣買하는 일이 있기에 이르렀으며 年을 거침에 따라서 漸次 그 數를 增加하여 因襲이 오래되어 드디어 私賭地 假賭地 小賣賭地라고 稱하고 左와같은 文記에 依하여 小作權을 賣買하는 惡慣習이 생기었으며, 그 賣買 역시 盛行하기에 이르렀다. 그 價格도 土地價格의 一割 乃至 三割정도 되었으나……” 云云, 朝鮮總督府『朝鮮小作慣行』(上卷) p. 717. 其他 他地域의 경우에 대해서는 특히『朝鮮ノ小作慣行』(下卷)參考編『從來ノ朝鮮ノ小作慣行調査資料』p. 418 및 p. 432 參照.

自己의 耕作地에 대하여 一定의 權利를 <賭地權>의 形態로 強化하여나가는 發展過程을 端的으로 나타내고 있다. 李朝後期에 있어서의 <賭地權>에 集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小作農의 耕作地에 대한 權利는, 動態적으로 볼 때, 身分的 自由의 程度와 貨幣經濟의 成長度에 比例적으로 增大되어 가고 擴大되어 갔음을 推定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간단한 考察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李朝後期에 發生하여 日帝初期에 消滅된 小作農의 <賭地權>의 起源은 小作慣習의 平面的인 差異나 그 具體的 事例의 分類에서 考察할 것이 아니라 그 社會經濟的 條件의 態動的인 發展過程에서 考察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要컨대 小作農의 <賭地權>이 단순히 開墾, 築堤, 買收等に 의하여 起源하였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것이 李朝後期의 封建制度의 解體와 貨幣의 成長過程속에서 小作農이 自己의 耕作地에 대하여 스스로 權利를 成長시켜 나가는 土地所有制度에 있어서의 內的 變革過程의 한 運動形態로서 發生하였음을 注目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2. 小作農의 下級所有權의 成長

다음, 李朝後期부터 發生하여 日帝初期까지 展開된 이러한 小作農의 賭地權이 어떠한 性格의 權利인가 하는 問題가 擡頭된다. 日帝의 모든 資料와 日本人學者들은 하나같이 모두 이를 耕作權의 一種으로서의 <永小作>이라고 解釋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學者들도 이러한 解釋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것이 定說로서 傳受되고 있다. 그러나 <賭地權>을 <永小作權>으로 解釋하는 이러한 見解는 近代私有權概念의 先入見에 支配되어 賭地權의 實質上의 權利內容을 充分히 밝혀주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소위 定說의 地位를 차지하고 있는 見解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理由때문에 懷疑的이며, 오히려 그것을 社會經濟史的 概念으로서의 <下級所有權>으로서 解釋할 때 그 內容을 正確히 捕捉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첫째로, 李朝後期에는 <賭地權>이 發生하지 않은 小作地에서도 小作期限이 極히 長期이었다는 事實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⁶³⁾ 小作人이 小作料를 納付하는 限 地主가 恣意로 小作人을 小作地에서 追放하지 못하는 것이 慣習이었으며, 小作農은 自己의 小作地를 賣買할 수는 없었지만 그 耕作을 子孫에게 相續할 수 있었다. 즉 小作人이 死亡하는 경우에

(63) 李朝後期에 地域적으로 小作人이 頻繁히 交替된 것은 地主의 小作人 解雇에 의한 경우 보다는 小作人의 經濟的 零落으로 말미암은 離散과 他小作地에로의 移動으로 인한 小作人側의 條件에 의한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推定된다.

는 그 子孫이 當然히 그 小作을 繼承하였고 地主에게 事後에 通知하는 以外の 어떠한 節次도 必要치 않았으며, 地主도 이를 默認하는 것이 慣習이었다. 勿論 地主가 小作人을 交替하는 것이 不可能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 경우에는 小作料怠納 地稅怠納 耕作不實等の 慣習上の 事由가 發生했을 때 行해졌다.

李朝末期의 日本人調査資料에서도 이 事實이 자주 指摘되고 있다. 예컨대, “韓國에서 小作에는 期限을 付함이 없은은 大要를 前項에서 述한 바와 같다. 賭作法과 打作法을 不問하고 小作人이 小作料를 怠納하든가 또는 過失 등이 없는 限은 數年 數十年을 繼續함을 一般의 風習으로 한다. 그 中에 地主와 小作人의 關係가 圓滿한 때는 子子孫孫이 그 關係를 持續하는 것도 珍貴하지 않다. 처음부터 一定의 年限을 契約하는 것은 이를 듣지 못하였다... 이와같이 數年 數十年 數世에 걸쳐 小作關係를 持續하는 것이 적지 않다. 어떤 地方에 있어서는 因襲이 오래어 今日 地主가 小作人을 交送하려 할지라도 小作人等은 祖先의 代부터 此關係 있음을 理由로하여 容易하게 地主의 意思에 應하지 않는다”.⁽⁶⁴⁾

當時의 小作慣行의 小作期限의 持續이 이러하였는데, 다시 小作人이 加外의 勞動이나 資金을 投下하여 賭地權을 獲得하는 경우에 그 權利가 단순히 小作期間을 永久히 또는 長期間 持續할 수 있는 權利에 不過하였던가? 그렇게는 볼 수 없다. 小作地의 耕作期間을 永續 또는 長期間 持續시킬 수 있는 權利의 取得이라면 小作農이 구태어 特殊한 勞動이나 費用을 投下할 必要가 없었다. 小作地의 耕作의 持續은 그렇게 不安定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賭地權》이 《永小作權》 뿐만 아니라 小作人의 小作地에 대한 보다 큰 支配權을 發生시키었기 때문에 小作人은 過外의 勞動과 資金을 投下한 것이라고 理解된다. 따라서 小作農의 《賭地權》은 《永小作權》以上の 土地에 대한 支配權을 意味하는 것으로 追跡하여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李朝後期—末期에 土地私有權이 慣習적으로 確立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自然의 一部인 《土地》에 대해서는 이 時代에 資本主義的 私有와 같이 文字 그대로 完全히 排他的인 一物一主의 私有權이 確立된 것은 아니었다는 事實을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즉 土地所有에 있어서는 各階層의 社會勢力과 關聯하여 土地私有權에 諸種의 根本的 制約이 併存하였음을 注目할 必要가 있다.

따라서 地主의 土地私有權을 不可侵의 排他的 權利로 絶對視하고 小作農의 《賭地權》

(64)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下卷)參考編『從來ノ朝鮮ノ小作慣行調査資料』pp. 109—110. 參照. 이 調査資料는 繼續하여, 萬一 地主가 慣習을 어기고 小作人을 交送하려 하는 경우에는 小作人이 團結해서 그 土地를 小作하지 않을 것을 約束하므로 地主가 自己의 土地라 할지라도 이를 恣意로 交送할 수 없는 일이 發生한다고 쓰고 있다.

을 <借地權>의 一種으로서의 永小作權이라고 보는 前提는 成立될 수 없다. 小作農의 賭地權이 小作地에 대한 <永小作權> 以上の 強大한 支配權이었다면 그것은 地主의 土地所有權에 制限을 加하면서 밑으로부터 成長하여 土地所有 그 自體에 參與하는 權利로 될 可能性을 排除하지 않는다.

셋째로, 小作農의 <賭地權>이 小作料率을 切下시킨다는 놀라운 事實은 그것이 永小作權으로서 보더라도 土地所有權에 參與하는 權利로 成長한 것이 아닌가하는 推論을 成立시켜 준다. 賭地權이 發生한 土地에서 그것이 小作料를 切下시키는 比率는 <賭地權>의 成長度에 따라 多樣하며 地方에 따라서는 小作料率을 1/2에서 1/4로 切下시키는 反面에 다른 地方에서는 小作料率은 별로 切下시키지 못하고 他負擔만을 排除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李朝末期에는 대체로 <賭地權>이 小作料를 1/2에서 1/3로 切下시키는 것이 가장 支配의 形態였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大同江沿岸의 大同郡과 中和郡에서는 普通小作의 小作料率이 1/2이었는데 <賭地權>小作의 小作料率은 1/3~1/4로 切下되었으며⁽⁶⁵⁾, 日帝治下의 調査에서도 다음 第3表와 같이 普通小作의 折半에 不過하였다.

<第3表> 賭地權小作의 小作料 (1929年)

地 名	小 作 料 (畓一坪當)					
	賭地權이 附隨하는 것			賭地權이 없는 것		
	最 高	最 低	普 通	最 高	最 低	普 通
大 同 郡	斤	斤	斤	斤	斤	斤
南串面 芝浦里	0.6	0.38	0.50	1.10	0.90	1.00
同 小耳島里	0.6	0.40	0.50	1.10	0.90	1.00
同 大耳島里	0.6	0.30	0.40	1.10	0.90	1.00
同 月内里	0.6	0.29	0.50	1.10	0.80	1.00
中 和 郡						
唐井面 儉岩里	0.5	0.40	0.45	1.00	0.80	0.90
同 積善里	0.5	0.45	0.47	1.00	0.90	0.95

資料: 『朝鮮ノ小作慣行』(上卷) p. 755.

다른 地方에 있어서도 <賭地權>의 小作料率切下는 普遍的 事實이었다. 黃海道地方의 <中賭地>에 있어서도 元地主의 小作料徵收率은 生産量의 1/4에 不過하였으며 <永稅>에 있어서도 1/3로 切下된 것이 慣例이었다.⁽⁶⁶⁾ 鴨綠江流域의 <原賭地>에 있어서도 普通小作의 小作料率이 1/2이 支配의인 地域에서는 賭地權小作의 小作料率이 1/3로 切下되었으며 普通小作의 小作料率이 2/3인 地域은 賭地權小作의 小作料率은 1/2로 切下되는 것

(65) 朝鮮總督府 『朝鮮ノ小作慣行』(上卷). p. 755 參照.

(66) 朝鮮總督府 『朝鮮ノ小作慣行』(下卷) 參考編 『從來ノ朝鮮ノ小作慣行調査資料』 pp. 423—429 參照.

이 普通이었다.⁽⁶⁷⁾ 다른 地方에 있어서도 賭地權은 小作料率을 輕減시키었다.

地主의 土地所有權이 地代徵收權으로 具現되는 封建時代に 賭地權이 小作料率을 切下시킬 수 있는 權利이었다는 事實은 그것이 단순히 耕作權으로서의 <永小作權>이라기 보다는 地主의 土地所有權에 밑으로부터 制限을 加하면서 스스로 土地所有에 參與하여 一種의 <所有權>으로서 成長한 것으로 理解할 수 있다. 小作料率을 1/2(50%)에서 1/3(約 33%)로 切下시키는 가장 代表的 경우를 모델로 使用하는 경우에 <賭地權>은 總生産量의 約 17%에 該當하는 比率만큼의 小作料를 切下시키거나 또는 徵收할 수 있는 小作農의 小作地에 대한 支配權으로 되며 이것은 所有權의인 性格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地主의 土地所有權에서 이 比率만큼의 土地所有權이 分離됨으로써 元來의 地主의 土地所有權은 不完全한 것으로 되는 反面에 小作人은 적어도 이 比率만큼의 土地所有權을 自己小作地에 대하여 行使할 수 있게 된 것으로 理解되는 것이다.

넷째로, 小作農의 <賭地權>이 小作地에 대한 所有權의 一種으로 成長하였다는 事實은 賭地權을 가진 小作農이 1/3의 比率로 切下된 小作料를 怠納하는 경우에도 地主가 小作農의 賭地權을 消滅시킬 수 없었다는 事實에서 더욱 補強된다. 小作人이 小作料를 支拂하지 않거나 怠納하는 경우에는 地主는 小作料의 納入을 督促하고 그래도 小作料를 支拂하지 않는 경우에는 時價에 따라 <賭地權>을 買收하여 그 代價의 一部로서 小作料를 辨濟시킬 수 밖에 없었다.⁽⁶⁸⁾ 즉 小作料怠納이 賭地權 存續에 조금도 影響을 미치지 않았다. 이것은 日帝下의 <永小作權>이 小作料를 2年怠納하는 경우에 그 權利를 自動적으로 消滅시키는 경우와는 매우 對照的인 것이다.

小作農의 <賭地權>이 耕作權의 一種으로서의 <永小作權>에 不過하였다면 <小作料怠納>이라는 事由는 借地契約의 存續을 無効化시킬 수 있는 本質的인 缺格事由가 되어 <賭地權>은 當然히 消滅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鴨綠江沿岸의 <原賭地>, 大同江沿岸의 <轉賭地>로부터 慶尙道地方의 <並耕>, 全羅道地方의 <禾利>에 이르기까지 小作料怠納은 <賭地權> 消滅의 事由가 될 수 없었으며 賭地權은 그것이 買收되지 않는 限 언제 어떠한

(67) 朝鮮總督府中樞院『小作ニ關スル慣習調査書』pp. 41—43 參照

(68)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下卷)參考編『從來ノ朝鮮ノ小作慣行調査資料』p. 384 參照. 賭地權을 가진 小作農이 小作料를 怠納하는 경우에도 賭地權이 影響을 받지 않았다는 事實은 日帝의 모든 調査資料에서 指摘하고 있다. 또한 賭地權의 利弊를 論하는 자리에서도 賭地權小作에서는 小作人의 權利가 強固하기 때문에 小作人의 小作料怠納의 경우에도 制裁를 加할 特別한 手段方法이 없음이 地主側의 弊라고 들고 있다.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上卷). pp. 759—761 參照

경우에나 地主의 所有權과 對等하게 對抗할 수 있었다. 이것은 小作農의 <賭地權>이 地主의 土地所有權과 質的으로 對等한 所有權의 一種으로서 成長하였기 때문에, 小作料怠納의 경우에도 <賭地權>의 所有權의 性格 그 自體는 認定되었던 것이라고 解釋되는 것이다.

다섯째, 小作農의 <賭地權>의 賣買價格의 高價格이 <小作權>의 賣買로서는 妥當성이 없으며 <所有權> 一部の 賣買로 理解할 때 그 合理性을 發見할 수 있다. 또한 當時의 賭地權의 賣買形態는 所有權賣買와 全的으로 同一한 樣式과 觀念으로 展開되었다.

예컨대, 鴨綠江沿岸의 賭地權의 賣買價格은 다음과 같이 土地總價格의 1/3 에 達하였으며 地主의 所有權의 賣買價格의 1/2 에 達하였다.⁽⁶⁹⁾

- ① 賭地權이 附着되지 않은 土地 1日耕(約 2,000坪)……600圓
- ② 賭地權이 附着된 土地 1日耕……………400圓
- ③ 賭地權의 價格 1日耕……………200圓

다른地方에서도 賭地權의 賣買價格은 이와 비슷하게 高價格이며⁽⁷⁰⁾, 賭地權의 成長度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이는 慶尙南道 固城 및 晉州地方의 <並耕>에 있어서도 그 賣買價格이 李朝末期에는 最高 地價의 1/2 까지 達한 일이 있으며 賭地權이 沒落한 日帝初期에도 普通地價의 約 1/5 程度이었다고 報告되고 있다.⁽⁷¹⁾ 全國的으로 가장 代表的 價格을 抽出하기를 要求한다면 賭地權價格은 地價의 約 1/3, 地主의 土地所有權價格의 約 1/2 程度이었던 것으로 推定된다.

이 小作農의 <賭地權>의 賣買는 <文記>를 作成하여 土地賣買의 一形態로서 行해졌다. 만일 賭地權이 成長한 地域에서 土地에 대하여 完全한 支配權을 行使할 수 있도록 土地를 購入하려면 買收者는 地主에게 土地賣買文書를 作成하여 代價를 支拂하고 이를 讓受하여야 할뿐 아니라, 小作人에게도 土地賣買文記를 作成하여 代價를 支拂하고 이를 讓受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예컨대 日帝調查資料는 다음과 같이 報告하고 있다. “賭地權의 價格은 이와 같은 것으로서 賭地權이 附隨하는 土地의 地價는 그 影響으로 말미암아 어찌

(69)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下卷) 參考編『從來ノ朝鮮ノ小作慣行調査資料』p. 389 參照

(70) 大同江沿岸의 畚의 賭地權 價格의 變動을 文記를 通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朝鮮總督府調査) 즉 畚一斗落(約 250 坪)에 대하여 :

- ① 1851 年頃……二兩半, ② 1858 年頃……二兩六, ③ 1863 年頃……十三兩三, ④ 1895 年頃……五十兩, ⑤ 1900 年頃……六十圓, ⑥ 1903 年頃……百四十六圓, ⑦ 1908 年頃……百十圓, ⑧ 1919 年頃……百二十圓. 이 賭地權價格을 地價와 直接比較할 資料는 提示되고 있지 않았으나 朝鮮總督府의 調査資料는 이 地方의 賭地權價格이 地價의 40%이었다고 報告하고 있다.

(71)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上卷) p. 784 參照

한 地方에 있어서도 普通地에 比하여 賭地權의 時價를 控除한 價格으로 賣買되는 것이 普通이었다. 卽 大同江 및 鴨綠江沿岸의 畝에 있어서는 어떤 地方에서는 普通土地時價의 三, 四割이 賭地權價格으로써, 六, 七割이 그(地主)의 不完全所有權의 價格이 되는 것 같다. 威化島附近의 田에 있어서는 賭地權이 三分의 一, 그(地主)의 不完全所有權이 三分의 二의 價格으로써 去來됨을 普通으로 한다. 그리하여 現在威化島에 있어서는 王子製紙株式會社와 營林署 등이 同島에서 廣大한 貯水場을 買收할 때에 그 代價도 三分의 二를 地主에게, 三分의 一을 小作人에게 支拂하였다고 한다”.⁽⁷²⁾

小作農의 <賭地權>의 賣買價格은 賭地權이 所有權의 一部로서 成長하였음을 示唆해 줄 뿐 아니라, 그 成長度도 間接적으로 示唆해 주고 있다. 小作農의 <賭地權>은 밀으로부터 成長하여 土地所有 속에 參與하면서 地主의 所有權을 不完全한 것으로 만들고 土地所有權을 多元化시키어 하나의 土地에 對하여 地主가 所有權의 2/3에 接近하는 比率의 權利를 行使하고 小作人이 1/3에 該當하는 權利를 行使한 것으로 理解된다. 小作農의 賭地權의 成長度가 小作料率의 切下와 賭地權賣買價格의 地價와의 比率로써 測定될 수 있으며 兩者 사이에 높은 相關關係가 있음은 특히 注目할 만한 것이다.

여섯째, 小作農의 <賭地權>이 小作權으로서 보다는 所有權의 一種으로서 成長하였다는 事實을 나타내는 事實로서 <賭地權>이 轉貸될 때 小作料를 徵收할 수 있는 權利이었다는 事實을 留意할 必要가 있다. 土地所有權의 가장 強力하고 具體的인 支配力이 地代徵收에서 發揮되는데 反하여 耕作權의 一種으로서의 小作權은 地代徵收는 할 수 없고 그것을 使用하는 用益權이라는 點에 特徵이 있는 것이다.

黃海道 地方의 <中賭地>에서와 같이 <賭地權>을 不耕作者가 所有하여 이를 一般小作農에게 小作시키는 경우에는 賭地權所有者는 一定의 小作料를 徵收하였다. 이 때 그 賭地權所有者를 <中畝主>라고 하고 그 小作料를 <中賭支>, 元來의 地主에게 納付하는 小作料를 <元賭支>라고 불렀으며, 그 小作料率은 <中賭支>나 <元賭支>나 모두 各各 生産量의 25%程度이었다.⁽⁷³⁾ 黃海道地方의 <中賭地>에 있어서는 賭地權이 주로 小作

(72)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上卷) p. 742

(73) 예컨대, “中畝主는 年의 豐凶에 不拘하고 地主에 對하여 一定의 借地料를 支拂함을 要하였다. 이를 賭支 또는 元賭支라고 稱하고 벼 또는 其他穀物으로써 이를 定하였으며 그 額은 收穫의 四分의 一程度를 普通으로 하였다”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下卷) 參考編『從來ノ朝鮮ノ小作慣行調査資料』p. 423. 또한 “賭支에 의한 경우에는 小作人으로 하여금 元賭支를 地主에게 支拂케 하고 中畝主는 賭支額에 定한 中賭支(그 比率은 收穫의 四分의 一程度)를 徵收하였으며, 並作의 경우에는 收穫을 折半으로 한 額으로부터 元賭支를 控除하여 그 殘額을 中賭支로서 中畝主가 取得하였다” 同上 p. 424.

료를 徵收하는 權利로서 通用되었다.

鴨綠江沿岸이나 大同江沿岸의 <原賭地>나 <轉賭地>에 있어서도 <賭地權>을 가진 小作農이 그 小作地를 他人에게 <轉貸>할 경우에는 언제나 <賭地權>은 小作料를 徵收하였다. 이것은 其他 모든 地域에서도 同一하며 <賭地權>은 轉貸되는 경우에 生産量의 17—25%程度의 小作料를 徵收하는 것이 普通이었다⁽⁷⁴⁾. <賭地權>이 小作料를 徵收할 수 있는 權利이었다는 事實은 그것이 <所有權>으로 成長한 것이며, 小作農이 自己의 小作地에 대하여 所有權을 成長시키어 地主의 土地所有權에 制限을 加하면서 土地所有를 多元化시켰음을 端的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解釋된다.

일곱째, 李朝後期—末期에 걸쳐 農民들은 <賭地權>을 永小作權이나 借地權으로서가 아니라 <所有權>으로서 意識하였으며 慣習적으로 그것을 所有權으로 認定하고 있었다는 事實을 注目할 必要가 있다. 日帝의 調査資料는 各地方에서 賭地權이 農民의 小作地에 대한 財產權으로 되어 있음을 間接적으로 認定하고 있으며, 賭地權을 <永小作權>이라고 強辯하면서도 어떤 報告에서는 “農民은 전혀 土地所有權과 같이 思料하여 任意로 그 賭地權을 賣買”⁽⁷⁵⁾하였음을 감추지 못하고 報告하고 있다.

農民들이 <賭地權>을 <所有權>으로 意識하였으며 慣習적으로 認定되고 있었다는 事實은 賭地權과 關聯된 用語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黃海道地方의 文記에서는 <賭地權> 所有者를 <實畚主>라고 表記하는 것이 發見되며 賭地權이 徵收하는 小作料를 <實畚主賭支>라고 使用하고 있다.⁽⁷⁶⁾ 또한 慶尙道 固城·晉州地方에서 賭地權所有者를 <並耕主>라고 부른 것도 農民들의 所有權意識과 關聯되어 있다.⁽⁷⁷⁾

農民들이 <賭地權>을 스스로 所有權으로 意識하고 그렇게 慣習적으로 通用되었다는 事實은 賭地權의 歷史的 性格을 밝히는데 매우 示唆的인 것이다.

지금까지 考察한 일곱 가지의 事實을 놓고 볼 때 우리는 李朝後期—末期에 걸쳐 全國적으로 成長한 小作農의 <賭地權>이 小作地에 대한 小作農의 <下級所有權>으로서 成長한 것이라는 解釋을 定立할 수 있다. 小作農의 <賭地權>은 小作人의 小作地에 대한 單

(74) 賭地權이 徵收하는 小作料의 全生産量에 대한 17—25%의 比率은 賭地權이 小作料率을 切下시킨 比率과 當然히 相應되어 表裏關係를 이루고 있다. 即賭地權小作의 小作料率과 一般小作의 小作率의 差額만큼의 小作料를 賭地權이 徵收할 수 있었다. 이 두가지 事實은 모두 賭地權이 所有權의 性格을 가지고 있어서 小作料를 徵收할 수 있는(또는 小作料를 切下시킬 수 있는)權利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75) 朝鮮總督府中樞院『小作ニ關スル慣習調査書』p. 95 參照

(76)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下卷)參考編『從來ノ朝鮮ノ小作慣行調査資料』p. 423 參照.

(77)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下卷)參考編『從來ノ朝鮮ノ小作慣行調査資料』p. 435 및 『朝鮮ノ小作慣行』(上卷) pp. 779—782 參照

純한 耕作權以上の 支配權을 形成시킨 것이며 地主의 土地所有權에 制限을 加하여 그것을 不完全한 것으로 만들면서 밑으로부터 《土地所有權》에 參與하여 土地所有를 多元化시킨 것이었다고 推定된다. 그러므로 《賭地權》이 形成된 小作地에서는 地主가 所有權을 行使하였을 뿐만 아니라 小作人도 所有權을 行使하였던 것이다.

小作人의 이러한 所有權으로서의 《賭地權》은 앞서 본 바와 같이 小作料를 總生産量의 1/3 程度로 切下시키고 其他의 諸負擔을 輕減시키며 地主의 承諾을 要하지 않고 自由로 賣買 讓渡 抵當 續轉貸할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이 所有權을 他人에게 轉貸할 때에는 그 所有者는 全生産의 17-25%의 小作料를 徵收할 수 있었다. 이 小作農의 所有權의 成長度를 그 賣買價格의 側面을 通하여 볼때 地主의 所有權의 約 1/2, 全土地所有權의 約 1/3 程度로서 成長하여 있었던 것으로 推定되며 여기에 普通小作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耕作에 關한 慣習的 權利까지 合하여보면 小作人은 自己의 小作地에 대하여 매우 強大한 支配權을 行使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權利가 單純히 地主에게 對抗할 뿐만 아니라 第三者에게도 自由로 對抗할 수 있었다는 點에서만 보아도 이것은 「게르만」社會의 下級 所有權(Untereigentum) 보다도 더욱 強固하고 自由로운 《下級所有權》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日本人들이 하나같이 主張하고 있는 《永小作權》과 《下級所有權》으로서의 《賭地權》과는 어떠한 關聯이 있는 것인가? 永小作權은 《賭地權》이 가지고 있는 《所有權》의 性格에 附隨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賭地權을 實際耕作者로서의 小作人이 所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賭地權》의 所有權의 性格과 耕作權이 結合하여 農民이 그 所有權으로서의 賭地權을 放賣하거나 拋棄하지 않는 限 小作人은 小作地에서 追放當하지 않게 된다. 이것은 所有權이 아무리 不完全한 것이라도 그것이 同一土地에서 耕作權과 結合할 때 所有權이 存續할 때까지 耕作權을 保護하여 持續시킬 것은 當然한 歸結이다. 즉 小作農의 《賭地權》의 所有權의 性格은 慣習上의 耕作權을 永小作權으로 轉換시켜 所有權에 附隨시키는 것으로 理解된다.⁽⁷⁸⁾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賭地權》의 所有者가 實際의 耕作者인 것을 前提로 한 것

(78) 賭地權의 所有權의 性格이 《永小作權》獲得을 主觀的 動機로하여 成長한 것인지 처음부터 所有權獲得을 動機로하여 成長한 것인지는 지금의 制限된 資料로서는 結論을 짓기 어렵다. 鴨綠江·大同江·黃海道地方의 賭地權은 처음부터 所有權 그 自體의 獲得을 動機로하여 成長한 것으로 보이고 慶尙南道 固城·晉州地方의 《並耕》은 永小作權獲得을 主觀的 動機로 하여 成長한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는든 賭地權이 客觀的으로는 小作農의 小作地에 대한 所有權으로서 나타났으며 下級所有權의 成長을 통하여 永小作權 그 自體도 附隨的으로 成立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思料된다.

이다. 만일《賭地權》을 所有하고 있는 小作農이 스스로 耕作하지 않고 賭地權은 그대로 所有한 채 小作地를 他人에게 轉貸하는 경우에는 所有權으로서의 賭地權과 慣習上의 耕作權은 分離되어 그 《轉貸》를 받은 新小作人은 小作地에 대하여 어떠한 《永小作權》 같은 것을 갖지 못하고 오직 從來의 慣習上의 耕作權만을 갖게되며, 한편 《賭地權》은 黃海道地方의 《中賭地》에서 보는 바와 같이 《所有權》만이 發揮되어 小作料를 徵收하게 될 뿐이다. 그러므로 《賭地權》의 《永小作權》의 性格은 賭地權의 《所有權》에 附隨되는 것이며, 耕作小作人이 賭地權을 所有하는 限 그것은 賭地權의 所有權과 더불어 自動的으로 發生하는 것이다. 물론 그 所有權의 成長의 程度는 地方에 따라 若干의 差異가 나타나며 大同江沿岸의 《賭地》 또는 《轉賭地》에서와 같이 크게 成長한 경우나 慶尙南道 固城 및 晉州地方의 《並耕》에서와 같이 脆弱하게 成長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本質的으로 《賭地權》은 所有權으로 成長한 것이며 그 成長도가 낮은 곳에서는 《並耕》에서와 같이 「永小作權의 性格」이 좀더 表出되어 있을 뿐인 것이다. 要컨대, 日本人들이 말하는 「永小作權說」은 賭地權의 「所有權의 性格」에 附隨하여 賭地權內에 包含되어 있는 副次的인 小作人의 權利이었으며 慣習上의 耕作權이 賭地權의 所有權과 結合할 때 自動的으로 轉化되어 形成된 權利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李朝後期—末期에 걸쳐 全國的으로 나타난 《賭地權》이 小作農의 小作地에 대한 所有權으로 成長하였다는 事實은 우리 歷史의 發展의 새로운 側面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이것은 身分制의 漸次的 崩壞와 貨幣流通의 成長의 影響下에 小作農이 自己의 土地에 自己의 힘으로 《所有權》을 發展시켜나가는 새로운 變化인 것이다. 물론 이 小作農의 下級所有權은 排他的인 完全한 所有權으로까지는 成長하지 못하였으나 土地에 대한 地主의 土地所有를 縮少시키어 不完全하게 만들고 一土地의 全所有權의 約 1/3程度까지는 成長하여 있었다. 이것은 小作農民의 成長을 나타내는 것이며, 李朝封建時代에 가장 停滯되어 있었던 側面으로 從來까지 보아온 隸屬的인 小作農에 있어서도 스스로 封建的束縛을 解體시키고 自由로운 農民으로 上昇하려는 近代에로의 自生的인 歷史發展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事實의 한 側面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새로운 生命력을 가진 것이었다.

3. 下級所有權 成長의 두개의 길

小作農의 《賭地權》의 成長이 自由로운 小農民的 土地所有의 成立의 方向으로 나가는가의 問題와 關聯하여 우리는 李朝後期—末期에 있어서의 賭地權 成長의 두개의 類型을 抽出하여 對比하여 볼 必要가 있다. 그 代表的인 두개의 類型이 大同江沿岸에 있어서의 《轉賭地》 또는 《賭地》와 黃海道地方에 있어서의 《中賭地》이다.

A <轉賭地> 및 <賭地>에 있어서의 下級所有權의 成長

이 경우에는 <賭地權>을 實際耕作者인 小作人이 大部分 所有하여 <賭地權>成長이 바로 小作農의 밑으로부터의 成長에 의한 自由로운 小農民的 土地所有의 方向으로 展開되어 나갔다. 이 地方에 있어서의 賭地權의 밑으로부터의 成長의 諸特徵을 간단히 指摘하면 다음과 같은 點이 注目된다.⁽⁷⁹⁾

① 小作料率을 從來의 生産量의 1/2에서 1/3로, 때로는 1/5까지도 低下시킨다는 事實이다. 이것은 小作人의 地代負擔을 輕減시킴으로써 小作農의 經濟生活을 向上시켜 주었다.

② 小作料의 徵收方法을 定額制화한다는 事實이다. 이것은 小作料額을 一定不變의 額으로 固定시킴으로써 生産力의 增加分이 모두 小作農의 收益으로 歸屬되므로 小作農의 生産意慾을 刺戟하여 生産力을 增進시키고 時間의 經過와 더불어 小作農을 富裕하게 하는 것이었다.

③ 小作이 安定되고 自己의 所有權이 一部 形成되므로 小作人이 土地改良에 投資를 하고 栽培方法을 改善하여 生産力을 增進시키었다.

④ 小作料를 <貨幣小作料>化함으로써 長期的인 價格上昇의 影響에서 小作農이 有利한 位置를 設定하여 實際小作料를 더욱 切減하고 封建的 自然經濟의 解體와 貨幣的 經濟關係의 成長을 促進하였다.

⑤ 自己의 小作地에 대한 賭地權을 擔保로 하여 營農資金의 確保와 信用의 獲得을 容易하게 할 수 있었다.

⑥ 地主와의 關係에서 從來의 主從關係를 打破하고 自由로운 契約關係를 設定하여 無償 勞動 響應 等 小作料以外的 諸負擔을 撤廢하고 小作農의 社會的 身分의 地位를 向上시키었다.⁽⁸⁰⁾

⑦ 小作農은 自己의 小作地의 所有權의 一部를 地主와 第三者에 自由롭게 對抗하여 賣

(79) 이 地方의 賭地權의 特徵이 小作料의 低廉, 定額小作料, 金納等의 存在에 의하여 小作農에게 매우 有利하게 展開되었다는 事實을 日本人들의 調査資料는 들고 있다. 예컨대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上卷) p. 753 및 758. 또한 그것이 生産力增進에 刺戟한 事實도 여러 곳에서 指摘하고 있다. 예컨대, “定額小作料인 大同江沿岸 賭地에 있어서는 小作料가 低廉하고 定額制이기 때문에 近來 小作人의 企業心도 附近一般小作人에 比하여 훨씬 賭地小作人은 勤勞的”이라고 하고 “小作人이 土地를 愛護하고 土地改良을 하며 栽培技術을 改善하여 生産을 增進시킴으로써 自己의 收益을 거둘 수 있다”고 쓰고 있다. 同上 pp. 759-760參照. 여기서는 이 地方의 賭地權成長의 社會經濟的 影響을 包括적으로 간추려 보았다.

(80) 특히 다음의 記述이 주목된다. “賭地權者는 普通小作의 小作人과 같이 地主에 대하여 從屬的關係를 갖지 않고, 比較的 自由對立의 思想을 가지며, 또한 普通小作人과 같이 地主에 對하여 贈與 響應을 하는 習慣이 적다”云云.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上卷) p. 760.

買 抵當 贈與 相續함으로써 自己의 耕作地에 대하여 所有權을 더욱 擴大시켜 나가면서 半 獨立的의 農民으로 成長하였다.

大同江沿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이러한 賭地權成長의 類型은 封建的의 地主制度를 밑으로부터의 小作農의 權利의 成長에 의하여 漸次 解體시키면서 自由로운 小農民의 土地 所有의 方向으로 나가는 變革的의 過程의 一面을 나타내고 있다.

B <中賭地>에 있어서의 賭地權成長

反面에 黃海道地方의 <中賭地>에 있어서는 小作人이 <賭地權>을 所有하는 경우는 적고 도리어 資産있는 富豪가 <賭地權>을 所有하여 成長시키었다. 그 理由는 이 地方의 賭地權發生小作地가 주로 宮房土地이었다는 事實에서 起因한 것 같다.⁽⁸¹⁾ 이 地方의 <中賭地>에서는 所有權을 元地主인 <宮房>과 賭地權所有者인 <中畚主>가 分割所有하고 있었으며, <賭地權>은 <中畚主>의 小作料徵收를 위한 所有權으로서만 그 支配力을 發揮하였기 때문에 中畚主의 支配下에 있는 小作農은 普通小作에 있어서의 一般小作農과 대체로 同一한 狀態에 있었다. 따라서 이 地方의 <中賭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이러한 賭地權成長의 類型은 大同江沿岸의 경우와 같이 小作農의 負擔을 輕減시키고 小作農의 社會經濟的의 地位를 向上시키며 農業生產力을 增進시키어 直接的으로 自由로운 小農民의 土地 所有의 方向으로 나아가는 變革的의 過程을 遂行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賭地權所有者가 <中間地主>로 됨과 동시에 小作農은 그들의 地位를 別로이 向上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大同江沿岸의 賭地權成長의 類型과는 對照的인 것이다.

그러나 이 地方의 <中賭地>가 小作農의 社會經濟的의 地位의 向上이나 農業生產力의 增進에 반드시 沮害的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中賭地>의 成長은 이 地方에서 小作人이 開墾 築堤 買收 등 特別한 勞動과 資金을 小作地에 投下하였을 경우에 <中畚主>가 가진 것과 같은 <賭地權>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慣習을 正當化시켜주었으며 多數의 小作人이 이러한 <中賭地>를 模倣하여 <賭地權>을 獲得할 수 있었다. 또한 地主가 遠隔地에 居住하는 경우에는 小作人은 <中畚主>가 가진 <賭地權>과 같은 것을 模倣獲得하여 小作料를 輕減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러한 意味에서 이 地方의 <中畚主>에 의한 賭地權

(81) 이 地方에서는 일찍부터 宮房土地가 廣範圍하게 存在하였고, 이 宮房所屬의 未墾地 또는 荒無地를 資産있는 富豪(또는 權勢있는 兩班)가 宮房으로부터 特許를 얻어 相當의 資金을 出資하여 이를 開墾하거나 水害豫防을 위하여 堤防을 築造하고 이에 對한 報償으로 賭地權을 그들이 獲得하였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처음부터 耕作者가 아닌 資産家가 <中畚主>가 되어 賭地權을 獲得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下卷)參考編『從來ノ朝鮮ノ小作慣行調査資料』p.425參照

成長의 類型은 間接的으로 小作農의 賭地權成長의 밑으로부터의 길을 刺戟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⁸²⁾

여기서 우리가 注目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賭地權成長의 이 두개의 類型中에서 前者의 밑으로부터의 成長의 類型이 支配的이었다는 事實이다. 그 後者의 類型인 옆으로부터의 成長의 길이나 <賭地權>의 轉貸는 黃海道地方의 <中賭地>를 除外하고는 모두 極少數에 不過하였다. 鴨綠江沿岸의 <原賭地> 大同江沿岸의 <轉賭地>와 <賭地> 黃海道地方의 <永稅>, 慶尙道地方의 <並耕> 全羅道地方의 <禾利> 등이 그 賭地權의 成長度에는 差異가 있으나 모두 小作農에 의한 밑으로부터의 成長類型으로서 直接的으로 小作農의 社會經濟的 地位를 向上시키고 農業生產力의 增進을 刺戟하면서 發展하고 있었다.

李朝末期까지에는 이러한 <賭地權>의 成長은 全國各地에 廣範圍하게 나타나서 地圖를 펴놓고 그리면 마치 無數한 點의 分布와 같이 成長하고 있었다. 물론 當時까지 그 成長度는 封建的 土地所有를 完全히 排除할 수 있을 만큼 成長하지는 못했으나 <原賭地> <轉賭地> <賭地>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土地所有權의 約 1/3程度까지 成長한 곳이 많았으며, 小作地에 대한 土地所有權을 多元化하여 地主의 所有權을 不完全한 所有權으로 더욱 더 縮少시켜나가면서 小作農의 下級所有權을 더욱 成長시켜 나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IV. 土地調查事業과 賭地權의 沒落

1. 土地調查事業의 賭地權 否定

李朝後期—末期에 걸쳐 小作農의 自己小作地에 대한 下級所有權으로서 強靱하게 成長한 <賭地權>은 그것이 더욱 完全한 所有權으로 充分히 成長하기 以前에 日本人들에 의한 李朝末期의 土地私有權法認政策과 1910年부터 本格的으로 實施된 「土地調查事業」에 의하여 그 成長이 根本的으로 沮止됨과 同時에 賭地權 그 自體도 法律上으로 否定되었다.

土地調查事業은 日帝가 우리나라를 植民地로 強占한 後 植民地支配의 經濟的 基礎作業으로서 實施한 多目的的인 植民政策上의 一事業이었다. 그 土地調查事業의 重要內容의 하나인 土地所有權調查는 土地에 대하여 <一物一主>의 排他的 私有權을 法認하고 그것을 保

(82) 예컨대, 黃海道地方의 <永稅>는 同一地方의 <中賭地>의 刺戟과 影響을 받아 小作農이 <賭地權>을 所有하게 된 典型的인 경우라고 推定된다. 물론 <中賭地>라는 名稱을 가지고 小作人이 賭地權을 所有하여 그것을 成長시킨 事例도 많이 發見된다. 그러나 同一地域에서 賭地權 小作의 名稱을 慣習上으로 구배어 區分한 것은 <永稅>가 주로 小作人이 <賭地權>을 가지고 成長한 경우이기 때문에 中贖主의 <中賭地>와 區分한 것이 아닌가 推定된다.

障하는 土地私有權登記制度를 樹立하는 것을 事業目標로 한 것이었다.⁽⁸³⁾ 土地調查事業以前 李朝末期에도 물론 土地私有權이 慣習上으로 確立되어 있었으나 그것이 相對的으로 많은 制限을 받는 것이었고 法律上의 神聖不可侵의 絶對的 排他的 私有權으로서 《法認》되지 않았다는 點에서 土地調查事業以後의 資本主義的인 一物一主의 絶對的 土地私有權과는 若干 差異가 있는 것이었다. 土地私有權法認은 小作農의 《賭地權》이 成立된 土地에서의와 같이 多元的 土地所有가 成立된 土地에 있어서는 一定의 土地所有權을 行使하는 二人以上の 土地所有權者中 어느 쪽을 法律的 保護를 받는 排他的 土地私有權者로 法認할 것인가 하는 選擇의 問題가 當然히 發生하는 것이었다.

日帝의 土地調查事業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申告主義》의 方法에 의하여 土地所有權者를 法認하였다. 即 朝鮮總督이 定한 一定한 期間內에 土地所有權者가 土地調查局에 《申告》하여 土地私有權을 認定받아 登記되도록 規定한 것이었다. 『朝鮮土地調查事業報告書』는 土地所有權調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地主의 調査는 原則的으로 申告主義를 採用하고, 同一土地에 대하여 二人以上の 權利主張者가 있는 境遇와 오직 一人의 權利主張者 밖에 없으나 그 權源에 疑問이 있는 것을 除하고는 權源調査를 하지 않고 申告名義人을 地主로 認定하였다.』⁽⁸⁴⁾ 多元的 土地所有가 存在하는 곳에서 機械的으로 適用되는 《申告主義》는 《弱肉強食의 原理》이었다. 그것은 土地所有에 대한 各階層의 權利中에서 가장 強大한 權利가 他權利를 暴力的으로 排除하고 私有權으로 法認됨을 助長하는 方法이었다. 當時 一般小作人의 自己小作地에 대한 慣習上의 耕作權은 所有權으로 申告될 만큼 成長하여 있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土地私有權으로 法認되어 自由로운 小農民의 土地所有가 成立될 可能性은 이 申告主義의 方法에 의하여 처음부터 排除되었다. 뿐만 아니라 小作農의 《賭地權》까지도 이 申告主義의 方法에 의해서는 土地所有權으로 申告될 수 없었다.⁽⁸⁵⁾

(83) 土地調查事業의 內容은 ① 土地所有權調查, ② 土地價格의 調査, ③ 地形地貌의 調査의 세 部分으로 構成되어 있었으나 그 核心은 土地所有權調查에 있었다. 土地調查事業報告書에 의하면 土地所有權 調査는 다음과 같은 內容의 調査이었다. “土地所有權 調査는 土地의 所在地目 地番 地籍 及 所有者를 調査하며, 地籍圖에 依하여 各筆地의 位置 形狀及 疆界를 表劃하고, 數百年來 分糾하여온 土地의 條件을 解決하며, 土地所有權 및 그 疆界를 査定하여 所謂 地籍을 明數하게 함으로서 土地登記制度의 創設을 期하는 것이다. 朝鮮總督府『朝鮮土地調查事業報告書』p.1.

(84) 朝鮮總督府『朝鮮土地調查事業報告書』p.84.

(85) 1898년에 舊韓國政府가 量田計劃을 樹立하여 「量田」(土地調查)을 實施할 때에도 이 『各階層의 所有權의 選擇問題에 當面하였다. 當時 量田은 별 進捗을 보지 못하고 挫折되었으나 國有地의 一部에서 實施된 結果를 보면 小作人이 《賭地權》을 所有하고 있으면서 世襲的으로 耕作하고 있는 경우에 그 土地의 所有主로서 臺帳에 記載한 事實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日帝의 申告主義의 方法에 의하면 적어도 驛屯土 宮庄土 牧場土 등 같은 國有地에서는 上級の 地主가 國家나 國王(또는 宮房)이므로 耕作者가 申告할 수 있는 餘地는 처음부터 排除되는 것이다.

小作農의 <賭地權>은 小作地에 대한 所有權의 一種으로 成長하고 있었으며 當時에 農民들도 이를 所有權으로서 意識하고 認定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從來의 地主의 所有權을 排除하고 排他的 私有權으로 申告할 수 있을 만큼 強大하게 成長하지는 못하였다. 賭地權 賣買價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全土地價格의 2/3 가 地主의 所有權價格이었다고 하면 小作農의 所有權價格은 全土地價格의 1/3 程度로 成長하여 있었다. 이러한 條件下에서 日帝의 土地調查事業은 <申告主義>의 方法을 擇하여 當時까지는 보다 強勢의 權利이었던 地主의 所有權을 私有權으로 申告케 하여 法認하고 小作農의 <賭地權>은 이를 自動的으로 土地私有權法認過程에서 排除하여 버렸다.

우리나라 農村社會의 內部的 要請에 의하여 우리自身の 土地所有問題의 解決方法으로 實施된 것이 아니라, 日帝의 植民政策上的 目的에 따라 外部에서 強力的으로 주어진 土地調查事業의 申告主義는 小作農의 小作地에 대한 下級所有權으로 成長하고 있었던 <賭地權>의 所有權의 性格을 全的으로 否定하여 버린 것이다.

2. 永小作의 設定

日帝의 土地調查事業은 <賭地權>을 否定하고 아무런 報償없이 土地私有權法認過程에서 이를 排除하여 버렸으나 長期間에 걸친 小作農의 社會經濟의 成長에 의하여 成立된 賭地權이 日帝의 劃一的인 否定에 依하여 하루아침에 消滅될 수는 없었다. <賭地權>의 所有權의 性格에 대한 日帝의 法律上的 否定에도 不拘하고 農民層은 慣習上으로 이를 認定할 뿐 만아니라, 小作農의 頑強한 抵抗과 繼續的인 <賭地權>의 主張에 부딪치었다. 이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設定한 것이 이른바 <永小作>인 것이다.

日帝는 1912年 「土地調查令」을 發表함과 同時에 「朝鮮民事令」을 發表하여 從來의 小作農의 <賭地權>의 所有權의 性格은 이를 徹底히 否定하고 그 代身 借地權의 一種으로서의 <永小作權>을 法律上的 權利로 設定하였다. 朝鮮民事令이 規定하고 있는 永小作權의 權利內容을 보면, 小作期間을 小作契約時로부터 「20年以上 50年以內」로 認定하고 이러한 長期小作契約에 있어서는 小作人이 이를 <登記>하는 경우에 그 期間동안의 小作權으로서 認定하고 그 小作權의 讓渡를 認定한다는 것이었다.⁽⁸⁶⁾

그러나 賭地權을 가진 小作農의 立場에서 볼 때 從來의 <賭地權>과 日帝가 設定한 <永小作權>은 너무나 다른 것이었다. 從來 賭地權이 가지고 있는 小作料切下의 能力이나 地主와 第三者에게 自由롭게 對抗할 수 있는 所有權의 性格은 日帝의 <永小作>制에서는 消滅되었다. 賭地權을 他人에게 轉貸하는 경우에 發生하는 小作料徵收의 權利도 日帝의 <永小作>에서는 否定되었으며, 그 小作權의 賣買나 讓渡도 地主의 制約을 받도록

(86) 朝鮮總督府 『朝鮮ノ小作慣行』(下卷) pp. 135-142.

規定되었다. 뿐만 아니라 小作期間만을 두고 볼지라도 賭地權小作에 있어서는 小作農이 <賭地權>을 販賣하거나 스스로 그것을 拋棄하지 않는 限 無限히 小作을 持續시킬 수 있는 것인데 反하여, 日帝가 設定한 <永小作>은 小作期限을 20年—50年에 限定하여 그 期間이 經過하면 自動적으로 永小作權이 消滅되도록 規定하였다. 또한 特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賭地權>에 있어서는 그것이 所有權으로서 成長한 것이기 때문에 小作農이 小作料를 怠納하는 경우에도 地主가 이를 理由로 하여 賭地權을 消滅시키거나 小作農의 權利를 消滅시킬 수 없었는데 反하여, 日帝가 設定한 <永小作>에서는 小作農이 小作料를 2年間 怠納하는 경우에는 地主가 永小作權을 否定하고 이를 消滅시킬 수 있도록 規定하였다. 要컨대, 日帝가 設定한 <永小作>에 있어서는 <賭地權>의 거의 모든 權利가 否定되고 오직 그 小作期間을 20年—50年의 長期間 保障하는 權利로 變形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土地調查事業過程에서나 그 以後에 있어서도 賭地權을 가진 小作農은 從來의 <賭地權>을 <永小作>으로서 登記하지 않았으며, 從來의 賭地權을 그대로 持續시키고자 하였다. 日帝治下에서 部分的으로 나타난 永小作은 李朝後期—末期의 賭地權이 <永小作>으로 登記된 것 보다는 주로 日帝治下에서 새로이 小作契約에 들어간 長期小作으로서 展開된 것이었으며, 따라서 그 件數도 微微하였다. 日帝의 統計에서 <永小作>으로 登記된 것을 보면 1930年까지 總計 516件 (5,832筆)에 不過하였다.⁽⁸⁷⁾ 또한 日帝下에서는 永小作의 設定原因도 小作農의 一般的인 社會經濟의 成長에 의한 것이 아니라 地主의 便宜, 自作農의 永小作人으로서의 沒落, 地主·小作人間의 親交關係, 其他 雜多한 事情에 의하여 設定되었다.⁽⁸⁸⁾

(87) 이것을 年度別로 보면 1917年에 3件(13筆), 1918年에 1件(1筆), 1919年에 10件(58筆), 1920年에 15件(41筆), 1921年에 12件(102筆), 1922年에 21件(429筆), 1923年에 28件(670筆), 1924年에 70件(527筆), 1925年에 45件(344筆), 1926年에 73件(367筆), 1927年에 28件(272筆), 1928年에 60件(820筆), 1929年에 98件(991筆), 1930年에 82件(1,197筆)이었다. 1930年의 경우를 道別로 보면 忠南이 3件, 全北이 16件, 全南이 15件 慶北이 4件 慶南이 16件 黃海가 4件 平南이 1件 平北이 7件, 江原이 2件, 咸南이 12件, 其他不明이 2件이었다.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上卷) pp.703—704 參照

(88) 日帝調査資料는 日帝下에서의 <永小作> 設定의 原因으로 다음의 일곱가지를 들고 있다. “① 現在の 永小作人이 自己土地를 賣却할때 그 價格을 低廉케 하여 永小作權을 保留시킨 것, ② 地主가 土地賣却에 當하여 舊來의 親交 또는 親族關係에 있는 者를 小作人으로서 保護하기 위하여 設定시킨 것, ③ 土地所有權의 歸屬關係에 紛爭이 일어나서 다시 後日에 紛議의 憂慮가 있기 때문에 事實上的 所有權者가 相對方을 永小作人으로서 設定시킨 것, ④ 果樹園 桑園 苗圃設置의 希望者가 永小作權을 要求하여 이를 獲得한 것, ⑤ 債權者인 地主가 貸金回收의 便宜上 設定시킨 것, ⑥ 土地賣却에 當하여 灌水井의 使用權을 保留하기 위하여 이를 要求함에 의한 것, ⑦ 墓地를 得하기 위하여 土地를 買收하고 永小作權을 設定시킨 것” 이 중에서 ①이 自作農의 沒落에 의하여 永小作이 設定되는 경우이고 ③이 賭地權을 가진 小作農의 所有權紛爭으로 말미암아 永小作이 設定되는 경우로서 特히 注目하여 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上卷) p. 703 및 pp. 704—706의 表 參照

土地調査事業進行過程에서도 小作農은 <賭地權>을 永小作으로 登記하는 것이 아니라 所有權으로 法認받고자 하였으며, 土地調査事業의 所有權紛爭이 國有地에서 激烈하게 發生하였던 理由도 小作農의 <賭地權>이 國有地에서 強大하게 成長하여 있었던 事實과 關聯된 것이었다.⁽⁸⁹⁾ 그러나 土地調査事業의 賭地權否定과 그 以後의 地主側의 反擊은 李朝 後期—末期에 걸쳐 強靱하게 成長하였던 小作農의 <賭地權>을 急激히 沒落시키었다. 土地調査事業을 通하여 神聖不可侵의 絶對的 私有權을 法律에 의하여 保障받은 地主들은 法律을 根據로 하여 慣習上의 <賭地權>을 認定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小作人이 反抗하는 경우에는 서슴없이 訴訟을 提起하고 最後의 경우에도 賭地權을 日帝가 設定한 <永小作>으로서만 認定하려 하였다. 이것은 地主와 小作農間의 끊임없는 賭地權紛爭으로 나타났으며 結局 法律的 強權에 의한 賭地權의 沒落으로 歸結되었다.

3. 小作農의 反應

土地調査事業의 賭地權否定과 그 以後의 地主側의 賭地權否認에 부딪쳐 小作農이 어떠한 反應을 보이었으며 어떻게 賭地權을 持續시키려 하였는가 하는 것은 注目하여 보아야 할 問題이다.

(1) 賭地權確認訴訟

土地調査事業以後 地主側이 「公公然」히 賭地權의 存在를 否認하고 從來의 小作農의 慣習上의 權利를 侵害하는 경우에 小作人은 처음에는 주로 訴訟을 提起하여 그의 <賭地權>의 存在를 確認받으려고 하였다. 이러한 事態는 주로 新地主가 처음부터 賭地權을 否認할 意圖를 가지고 相對的으로 低廉한 賭地權小作地를 購入하여 賭地權慣習을 無視하고 小作料를 引上하며 小作農의 各種權利를 否認함으로써 頻發하였다. 그러나 小作農이 賭地權存在의 確認訴訟을 提起하는 경우에는 即刻 地主側도 그 不存在의 確認訴訟을 提起하여 對決하였다.

小作農의 賭地權 存在의 確認訴訟의 結果는 敗訴와 勝訴의 두 경우가 모두 있었으나 그 大部分의 경우는 小作農側의 敗訴로 歸結되었다. 敗訴의 主因은 賭地權存在의 「證據不充分」이라고 宣稱되었다. 우리가 이미 前章에서 본바와 같이 小作農의 <賭地權>은 民間의 小作慣行이었으므로 반드시 <文書>에 의한 證據를 갖추어둔 일은 많지 않았고, 農村의

(89) 日帝統計에 의하면 土地調査事業紛爭筆數 99,445 筆(33,937 件) 중에서 所有權紛爭이 그 99.7%에 達하는 99,138 筆이고 나머지 0.3%에 該當하는 309 筆만이 疆界紛爭이다. 또한 總所有權紛爭中에서 그 65%에 達하는 64,449 筆이 國有地에서의 紛爭이며, 나머지 35%에 該當하는 34,689 筆이 民有地에서의 紛爭이다. 國有地에서의 所有權紛爭은 國有地안에 農民의 「投托地」「混奪入地」等이 包含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도 驛屯土小作에서 그 例를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小作農의 下級所有權이 強大하게 成長하였던 것이 더욱 重要한 要因으로 推定되며, 이러한 事實은 民有地의 所有權紛爭에도 어느 程度 適用된다고 본다. 朝鮮總督府『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pp. 123—124 및 190—191 參照

慣行으로서 存在하여 遵守되고 成長한 것이있으므로, 《文記》가 存在한 경우에만 賭地權이 存在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大部分의 賭地權 確認訴訟이 文書上の 證據不充分을 理由로하여 小作人의 敗訴로 歸結되었다.⁽⁹⁰⁾

少數의 경우이었지만 小作人이 勝訴하는 경우에도 《賭地權》은 從來 小作農이 所有하고 있던 權利대로 確認되지 않고 日帝가 設定한 《永小作》으로서 認定되어 단지 小作期間을 一定年間 延長하거나 또는 20年—50年間 保障받는 것에 不過한 것으로 되었다. 小作農들은 訴訟을 提起하여 勝訴하는 경우에도 《賭地權》을 찾을 수 없음을 體驗하였으며, 日帝의 法律的 彈壓下에서는 訴訟이 無意味함을 알게 되었다.

(2) 小作料怠納運動

小作農은 《賭地權》 存在의 確認이 法律上的 訴訟으로 解決되지 않음을 體驗하자 自己들 끼리의 團體行動에 의한 抵抗을 展開하기 시작하였다. 賭地權을 가진 小作人들이 會合하여 地主側이 從來의 《賭地權》을 認定하여줄 때까지 小作料를 不納하는 運動을 展開한 것이 그 初期의 形態이다.

예컨대, 大同江沿岸인 大同郡 唐井面 儉岩里에서는 1916年頃에 土地를 買收한 新地主가 賭地權存在를 否定하고 小作人의 從來의 權利를 侵害하자 賭地權者 三十餘名이 小作料不納을 決意하고 4年間에 걸쳐 小作料를 怠納하고 抵抗하였다. 地主側은 結局 訴訟을 提起하였고 小作農側도 이에 應하여 訴訟을 提起하였다. 그 結果 日帝裁判部는 小作人의 《賭地權》이 存在하였다는 事實은 確認하였으나, 民法 第276條 “永小作人이 繼續하여 二年以上 小作料의 支拂을 怠하거나 또는 破産의 宣告를 받을 때에는 地主는 永小作의 消滅을 請求할 수 있다”는 條項을 適用하여 四年間の 小作料怠納을 구실로 賭地權을 消滅시키도록 判決하였다.⁽⁹¹⁾

(3) 賭地組合의 設立

小作農의 《賭地權》을 守護하려는 보다 積極的인 團體行動의 한 形態로서 地方에 따라서는 《賭地組合》이 組織되었다.

예컨대, 大同江沿岸인 大同郡 南串面 大耳島里 小耳島里 艾浦리에 있어서는 《賭地權》 守護를 目的으로 1917年에 里別 「賭地組合」이 組織되고 다시 1923년에는 「聯合賭地組合」이 組織되어 地主側의 賭地權否定에 積極的으로 對抗하였다. 이 地方의 賭地組合 設立의 概要를 日帝의 調查資料를 통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⁹²⁾

(90) 小作農의 《賭地權》紛爭으로 말미암은 訴訟事件의 件數와 小作農의 勝訴와 敗訴의 比率이 正確히 얼마이었는데는 現在의 不充分한 資料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것은 앞으로의 調查課題이다. 日帝調查資料들은 오직 訴訟事件의 多數이 있으며 大部分이 證據의 不足으로 小作農이 敗訴하였음을 事例로써 알려주고 있을 뿐이다.

(91) 朝鮮總督府 『朝鮮ノ小作慣行』(上卷) pp. 762—763 參照

(92) 朝鮮總督府 『朝鮮ノ小作慣行』(上卷) pp.764—765 參照

① 大耳島里·小耳島里·艾浦里·里別賭地組合의 概要

㉑ 設立年月日: 1917年 12月 12日

- ㉒ 組合加入戶數: 大耳島里賭地組合.....50戶
- 小耳島里賭地組合.....30戶
- 艾浦里賭地組合.....52戶

㉓ 設立의 目的: 土地調査査定後 各 地主가 奸巧히 訴訟을 提起하여 從來의 小作人의 賭地權을 革破하러 하는 者가 있으므로 一般賭地權者는 이의 對抗策으로서 團體行動의 必要를 認定하고 各自團合하였는 바 組合은 全의으로 賭地權을 保護함을 目的으로 함.⁽⁹³⁾

㉔ 組合員의 義務: 組合設立後 數年間은 賭地權을 가진 番一斗落(250坪)에 付하여 金五錢을 納付하고, 賭地權의 賣買에는 買受人으로부터 그 價格의 百分之一에 相當하는 金額을 納付積立하여 地主等과 訴訟하는 경우는 經費에 充當한다. 그래도 不足한 경우는 各組合員이 그 費用負擔의 義務를 갖는다.

② 南串面三區聯合賭地組合의 概況

㉑ 設立年月日: 1923年 1月 15日

㉒ 加入團體: 大耳島里賭地組合, 小耳島里賭地組合, 艾浦里賭地組合

㉓ 組合員數: 132名

㉔ 設立動機: 各里別 賭地組合은 組合員이 少數이어서 資力이 貧乏하므로 地主對訴訟事件等이 發生하는 경우는 最後까지 資金의 調達等이 심히 困難하게 될을 推慮하여 相互提携함으로써 最善의 努力을 支拂하여 勝利를 獲得하러 함에 있음.

㉕ 加入團體의 義務: 各組合員으로부터 徵收하지 않고 賭地權賣買納付金의 四分의 一을 納付積立하여 地主對訴訟費用等에 充當함. 그래도 그 經費에 不足한 경우는 各加入組合에서 負擔하는 것으로 함.

(4) 決議書 및 陳情書 運動

小作農의 스스로 <賭地權>을 守護하려는 積極的인 團體行動이 日帝의 彈壓에 의하여 크게 實効를 거두지 못하고 賭地權이 急激히 消滅하여가자 地方에 따라서는 決議書 및 陳

(93) 1917年의 最初의 賭地組合設立 趣旨書를 보면 다음과 같다

「宇宙宏洪한 中에 人民產業이 數千萬種이나 從其居處하여 各資生活하나니 村里에난 土地耕作에 全在한지라 故로 我江南은 數百年前부터 原番主와 小作人間에 築堀作番의 理由로 永賭地權을 設定契約하고 現今까지 傳繼生活하던 바 到今 原番主等이 自悖富權하고 賭地權을 挾雜奪取코자 한 즉 豈不痛限이리오 萬一 敗한 境遇에난 我江南數千戶가 下歸丘壑이면 至於流見失할 것은 不言可想이라 古代에도 守望相助하며 患難相救함은 鄉閭之美俗이니 然則 團體에서 固大한者는 決無한지라 細流가 合하여 河海요 塵埃가 積하여 泰山은 天然한 理致이니 我江南이 意氣團合하여 堅忍相保하면 彼等富權을 豈可不敵하며 數百年賣買하던 永賭地權을 一朝見失이리오 故로 吾人 協同의 標準으로 組合을 作成하고 若干金을 鳩聚立本 하고 本記條約을 熱心遵行하면 生活維持에 一大棟樑의 리라 大正六年 十二月十二日」

情書運動이 展開되었다.

이런데, 慶尙南道 晉州 및 固城地方에서는 1911年頃에 ≪並耕權≫을 否定하는 地主에 대해서는 小作人이 團結하여 水火를 不通하고 小作도 拒否하며 農繁期の 勞動力販賣를 拒否하기로 하는 決意書를 採擇하였으며, 小作人의 賭地權主張에 對한 日帝의 彈壓이 加重된 1930年頃에는 다시 ≪賭地權≫을 認定해 줄 것을 要請하는 陳情書를 關係官廳과 各界에 提出하고 最後까지 賭地權保存을 試圖하였다.⁽⁹⁴⁾

小作農側의 以上과 같은 賭地權守護를 위한 各種의 抵抗과 努力에도 不拘하고 日帝治下에서 小作農의 ≪賭地權≫은 急激히 消滅되어 1930年頃에는 그 存在의 痕跡을 찾기 어렵은 정도로 消滅되었다. 賭地權消滅의 原因은 무엇보다도 土地調查事業의 賭地權否定에 그 根本的 原因을 두고 있으며, 다시 이에 對한 小作農의 抵抗에 對한 日帝의 武力的 法律的 彈壓과 地主側의 賭地權排除行爲에 原因을 두고 있다.

日帝의 調查資料도 賭地權 消滅의 主要原因을 ① 賭地權紛爭의 結果 訴訟의 경우에 證據不充分의 理由로서 消滅된 것 ② 地主가 賭地權을 買收한 것 ③ 地主의 賭地權不存在 確認訴訟에 對하여 小作人이 만일 敗訴하거나 또는 그 訴訟費用과 時日을 要하는 것을 憂慮하여 地主의 權力的 請求에 甘하여 賭地權所有의 主張을 斷念한 것 등을 最多의 경우로 들고 있다. 또한 地主의 賭地權排除努力에 對해서 “小作人의 經濟生活 乃至 社會生活上의 弱點을 아는 地主가 權力을 가지고 事實上의 賭地權消失을 企圖”하거나 또는 地主가 賭地權을 買收하는 경우에도 “慣習上 普通 土地의 三四割은 賭地權의 價格임에 反하여 地主가 口實을 붙여 無智文盲의 小作人에게 極少額만 金錢을 支拂함으로써 賭地權을 排除”하는 例가 많았음을 指摘하고 있다.⁽⁹⁵⁾

V. 結 語

지금까지의 考察에서 밝혀지는 바와 같이 李朝後期—末期에 걸쳐 成長한 小作農의 ≪賭地權≫은 從來의 解釋과 같이 단순히 ≪永小作≫으로서 成長한 것이 아니라 小作農의 小作地에 對한 一部の ≪土地所有權≫으로서 成長한 것이 었다. 이 時代의 ≪賭地權≫의 成長은 李朝後期의 小作制度에 있어서의 身分制의 漸次的 崩壞와 貨幣流通의 成長과 關聯되어 나타난 것이며, 또한 逆으로 ≪賭地權≫의 成長은 小作農의 社會的 經濟的 地位를 向上시키고 貨幣地代와 定額小作料를 發展시키면서 이러한 새로운 社會變化를 더욱 促進시키었다.

李朝後期以後의 ≪賭地權≫의 成長은 從來까지 가장 停滯된 部門으로 보아온 農業部門

(94) 朝鮮總督府 『朝鮮ノ小作慣行』(上卷) pp. 789—794 參照

(95) 朝鮮總督府 『朝鮮ノ小作慣行』(上卷) pp. 763—764 參照

에 있어서도 小作農의 밑으로부터의 成長에 의하여 새로운 社會發展이 強靱하게 持續되었으며, 그것이 小作農의 土地所有에의 參與라는 根本的인 變化에 까지 미치고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이러한 小作農의 自己 耕作地에 대한 土地所有權의 成長은 李朝後期以後의 우리 歷史의 <近代>를 向한 發展의 強靱한 生命力的 一端을 表示해 주고 있는 것이다.

李朝末期에 이르러 小作農의 <賭地權>은 地價의 約 三分의 一에 達하도록 成長하여 地主의 土地所有權에 밑으로부터 制限을 加하고 그것을 不完全한 所有權으로 만들면서 小作農의 所有權을 더욱 成長시켜 나갔다. 그러나 小作農의 <賭地權>이 그 以上 成長하기 以前에 外部에서 強力的으로 주어진 土地調査事業은 土地私有權法認過程에서 小作農의 <賭地權>을 否定하고 地主의 所有權을 神聖不可侵의 排他的 私有權으로 法定하였다. 土地調査事業以後에는 小作農의 賭地權保存을 위한 頑強한 抵抗에도 不拘하고 法律上的 認定을 받지 못한 賭地權은 日帝의 彈壓과 地主側의 執拗한 賭地權排除作業으로 말미암아 急激히 沒落하게 되고 1930 年頃에는 그 痕跡을 찾아보기 어려운 程度로 消滅되기에 이르렀다.

日帝의 土地調査事業은 小作農의 <賭地權>을 否定한 대신 朝鮮民事令을 通하여 <永小作>을 設定하였다. 그러나 本論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李朝後期の <賭地權>과 日帝治下의 <永小作權>은 根本적으로 相異한 것이었다. 朝鮮民事令이 規定한 <永小作>은 李朝時代의 <賭地權>의 所有權의 性格을 完全히 否定하고, 賭地權이 成長한 土地의 耕作權이 賭地權의 所有權의 性格의 影響下에 永小作權으로 轉化되는 側面만을 抽出하여 20 年—50 年間의 小作權의 保護라는 形態로 變質시키었다. 그 結果 日帝下에서의 <永小作>은 賭地權의 繼承으로서가 아니라, <賭地權>은 沒落시키고, 단지 長期小作權으로서 展開된 것이었다.

李朝末期까지 꾸준히 成長한 小作農의 <賭地權>이 스스로 自由로운 農民的土地所有를 成立시킬 수 있는 推進力을 가지고 있었는가의 問題는 制限된 資料로서는 論議하기 어렵고 우리側의 資料가 蒐集檢討된 後에 論議될 다음의 宿題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日帝의 小作慣行調査資料를 가지고 그들이 永小作權으로 解釋하여 消滅시킨 <賭地權>이 小作農의 土地所有權의 一種이었다는 事實을 새로이 밝히고 李朝後期부터 末期에 이르기까지 小作農이 스스로 社會經濟的 地位를 向上시키면서 自己의 耕作地에 대하여 土地所有權을 成立·發展시키나간다는 事實을 指摘하여 새로운 問題를 提起하는 것이다.

〔筆者：서울 大學校 商科 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商科大學 專任講師